



인권상담센터를 소개합니다.

방문상담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과 변호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치료상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상담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전화상담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을 누르시면 전문상담원과 인권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화통역사가 화상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070-7947-7331

순회상담

인권 취약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순회상담을 통해 인권현안을 파악해 권리구제, 정책권고 및 실태조사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순회상담은 지역의 인권시민단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합니다.

인권상담네트워크

다양한 인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 및 인권시민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내담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민원회신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홈페이지나 우편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시면

인권상담센터 직원들이 관계부처 문의, 법령 검토,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엔 해당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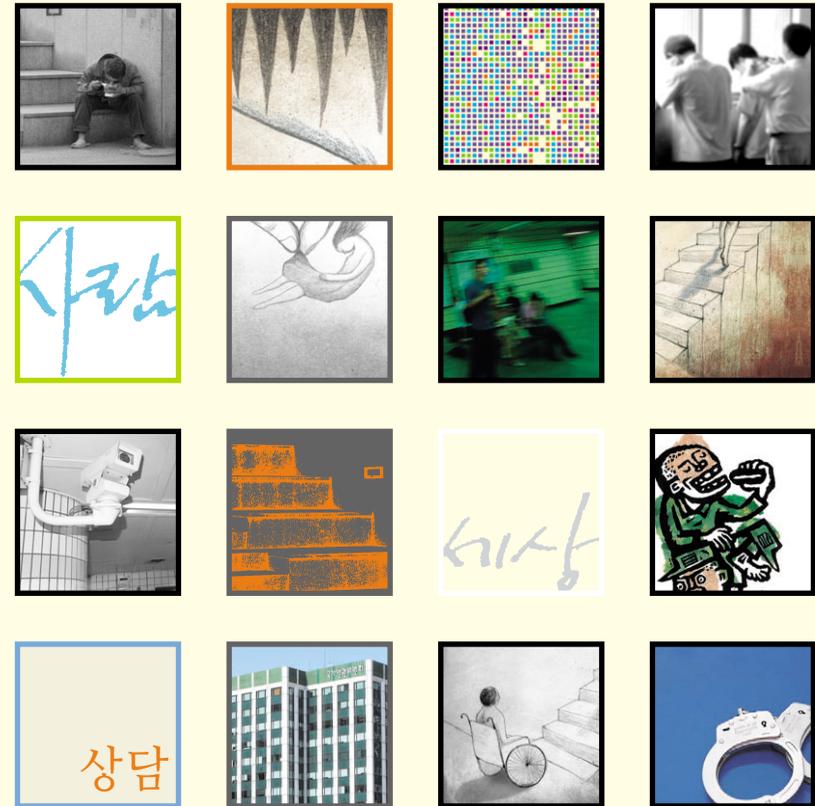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016-10

ISSN 2092-9714

11-12 인권상담사례집



11-12 인권상담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권리구제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적 인권전담** 기구입니다.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인권보호와 향상을 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준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진정에 대한
청문·심리를 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령, 제도, 관행 등의 개선을 권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국가기구로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준 국제**기구입니다.

국가의 법, 제도 등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조사·권고하고,
유엔 및 해외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합니다.

11-12 인권상담사례집

11-12 인권상담사례집

11-12 인권상담사례집

2012년 12월 31일 발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펴내고 인권상담센터(과장 최재경)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사례집 제작에 인권상담센터 김현철, 이윤정, 박상옥, 정미현, 장해정, 허진석이 참여했습니다.

젊은기획에서 디자인과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주소는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로 6번지 금세기빌딩 7층, 전화는 (02) 2125-9810, 팩스는 (02) 2125-9811,

이메일은 hoso@nhrc.go.kr, 홈페이지는 www.humanrights.go.kr입니다. 이 책의 ISSN은 2092-9714입니다.

편집자 주

- 사례집에 실린 상담내용은 실제 상담서를 기초로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구어체 문장으로 재구성한 것임.
- 사례집에 실린 위원회 결정문 및 보도자료 등은 전체 본문 중에서 상담내용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재편집한 것임.
- 원문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11-12 인권상담사례집〉을 발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장 치열한 현장은 인권상담센터입니다. 위원회의 관문으로서 국민이 인권문제라고 생각하는 온갖 현안들이 밀려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통계치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1월 25일 위원회 설립 이후 올 10월 말까지 11년 동안 접수된 진정, 상담, 안내, 민원의 총건수는 454,682건입니다. 이는 11년 동안 하루 평균 약 113명이 위원회 문을 두드린 결과입니다. 지난 11년의 여정을 통해 위원회가 언제나 부담 없이 찾아와 고민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근한 곳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 상담내용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인권 현주소를 보는 듯합니다. 아쉬운 것은 이같은 요구들을 인권위법의 한계 등으로 위원회가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민이 인권상담센터를 찾기까지 겪었을 지난한 과정과 아픔을 공감하며, 해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매년 발간하는 인권상담사례집 역시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인권상담사례집은 위원회를 찾는 분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이슈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당장 해결할 일은 그것대로 처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상담사례집에는 우리 사회의 각종 인권 현안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많은 분들의 한숨과 고통, 나아가 우리 위원회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11-12 인권상담사례집〉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25,429건의 상담 중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을 말해 주는 주요 사례를 선별·수록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11-12 인권상담사례집〉이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현**

〈11-12 인권상담사례집〉을 발간하며	4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1 형사절차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1 과도한 장구 사용	30		
1. 개요	10	1-2 신체의 자유 침해	32		
2. 접수경로별 상담현황	11	1-3 의료조치 미흡	34		
3. 유형별 상담현황	12	1-4 폭행, 폭언 및 가혹행위	36		
4. 회신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13	1-5 약자에 대한 조사 관행	38		
5. 인권침해 상담	15	1-6 불심검문	40		
6. 차별행위 상담	21	1-7 부당수사	41		
7. 기타상담	24	1-8 적법절차 위반	44		
		1-9 피의사실 유포	46		
		1-10 기타	47		
11-12 인권상담사례집 개요		2 구금시설, 공직유관단체, 법원			
1. 사례집 어떻게 구성했나?	26	2-1 의료조치 미흡	51		
2. 영역별 사례 선정 배경	26	2-2 폭행 및 가혹행위	52		
		2-3 인격권 침해	54		
		2-4 외부교통권 제한	56		
		2-5 진정권 방해	58		
		2-6 공직유관단체에 의한 인권 침해	59		
		2-7 판사의 막말	61		
		3 정신병원			
		3-1 적법절차 위반의 강제입원	64		
		3-2 폭행 및 강박	67		
		3-3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69		
		3-4 의료조치 미흡	70		
		3-5 외부교통권 제한	72		
		3-6 강제노역	74		
		3-7 진정권 방해	76		
		3-8 계속입원	78		
		4 군대			
		4-1 가혹행위(성추행 포함)	82		
		4-2 의료조치 미흡	84		
		4-3 군대 내 사망	87		
		4-4 군 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	88		
		5 학생인권			
		5-1 체벌	92		
		5-2 간접체벌	94		
		5-3 인격권 침해	96		
		5-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침해	98		
		5-5 학교폭력	100		
		5-6 집단 따돌림(왕따)	102		
		5-7 휴대폰 사용 · 소지 금지	104		
		5-8 용모 규제	106		
		5-9 자율학습 강요	108		
		5-10 임신, 출산과 학습권	109		
		6 정보인권			
		6-1 개인정보 수집	112		
		6-2 개인정보 열람	114		
		6-3 개인정보 유출	116		
		6-4 생체정보 수집	118		
		6-5 CCTV	121		
		6-6 GPS	123		
		7 장애인 차별			
		7-1 고용상의 차별	126		
		7-2 상업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128		
		7-3 교육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130		
		7-4 정당한 편의 미제공	132		
		7-5 이동권	135		
		7-6 장애인 학대(임금착취 포함)	137		
		7-7 정보통신 접근권	140		
		7-8 기타	142		
		8 성희롱			
		8-1 공공기관	146		
		8-2 직장	148		
		8-3 학교	151		
		8-4 병원	153		
		8-5 복지시설	155		
		8-6 기타	156		
		9 나이 차별			
		9-1 모집, 채용	160		
		9-2 퇴직, 해고	162		
		9-3 교육, 훈련	164		
		9-4 재화 · 용역의 공급 또는 이용	166		
		9-5 기타	167		
		10 이주민 인권			
		10-1 강제단속	170		
		10-2 강제퇴거	172		
		10-3 임금체불과 노동력 착취	174		
		10-4 결혼이주여성	176		
		10-5 난민	178		
		10-6 기타	180		



11 기타 차별

11-1 용모, 신체조건	184
11-2 학력	186
11-3 병력(病歷)	188
11-4 전과(前科)	190
11-5 국적	192
11-6 성차별	195
11-7 혼인	198
11-8 임신, 출산, 육아	199
11-9 비정규직	201
11-10 사회적 신분	204
11-11 가족관계	206

12 사회적 약자

12-1 감정노동자	210
12-2 경비원	213
12-3 노숙인	215
12-4 노인	217
12-5 한진중공업	219
12-6 강정마을	220
12-7 기타	222

13 북한인권

13-1 중국 공안의 북한이탈주민 폭행·고문	224
13-2 북한이탈주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5
13-3 북한이탈주민 간 평등권 침해	226
13-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격권 침해	228
13-5 기타	229

14 기타

14-1 제 코가 석자인 인권위부터 비정규직 문제 개선하시오	232
14-2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징계, 안 됩니다	233
14-3 상담 공무원의 신변안전 확보가 시급합니다	234
14-4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좀 막아주세요	235
14-5 정신병원은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236
14-6 선불금 티켓다방에서 근로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237
14-7 학생에게 성희롱 당한 교사는 억울합니다	238

11-12 인권상담사례집_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개요
2. 접수경로별 상담현황
3. 유형별 상담현황
4. 회신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5. 인권침해 상담
6. 차별행위 상담
7. 기타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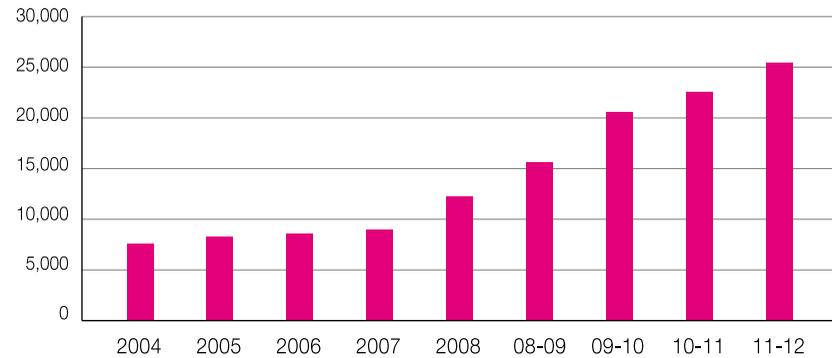
1. 개요

〈11-12 인권상담사례집〉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25,429건의 상담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집계기간이 2년여에 걸쳐 있는 특성을 감안, 사례집의 공식 명칭도 〈11-12 인권상담사례집〉으로 정했다.

분석대상을 양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10-11 인권상담사례집〉(2010. 7. 1.~ 2011. 6. 30.)의 22,596건보다 2,833건(12.5%) 증가했다. 질적 측면에서도 인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실례로 상담내용이 진정접수(진정예정 포함)로 이어진 사례가 지난해의 4,491건에서 5,138건으로 14.4% 증가했다.

〈표〉 연도별 분석대상 현황

구분	2004 상담사례집	2005 상담사례집	2006 상담사례집	2007 상담사례집	2008 상담사례집	08-09 상담사례집	09-10 상담사례집	10-11 상담사례집	11-12 상담사례집
기간	'01.11.25~ '03.12.31	'04.1.1~ '05.6.30	'05.7.1~ '06.6.30	'06.7.1~ '07.6.30	'07.7.1~ '08.6.30	'08.7.1~ '09.6.30	'09.7.1~ '10.6.30	'10.7.1~ '11.6.30	'11.7.1~ '12.6.30
건수	7,605건	8,262건	8,586건	9,073건	12,292건	15,631건	20,562건	22,596건	25,42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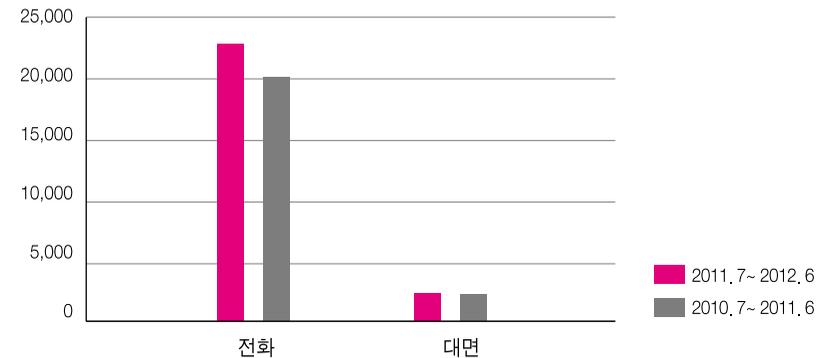
2. 접수경로별 상담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휴대폰은 지역번호 입력)을 누르면 인권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왔다. 그 결과 1331 전화상담은 인권과 관련한 대표적인 상담 창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전화상담이 급증하여 2007년 7,205건/ 2008년 10,158건/ 2009년 13,517건/ 2010년 18,130건/ 2011년 20,364건/ 2012년 22,977건(10.31. 현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면상담은 2,29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건 증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변호사, 노무사, 심리치료상담사, 성차별 예방 상담사 등 각계 전문가 60여명을 인권상담전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분야의 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과 이메일 등을 활용한 상담은 전무했다. 이는 위원회가 앞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표〉 접수경로별 상담현황

구분	FAX	대면	우편	이메일	인터넷 문자	인터넷 화상	인터넷 전화	전화	기타	합계
'11.7.~'12.6.	-	2,293	-	-	-	-	-	23,136	-	25,429
'10.7.~'11.6.	1	2,230	1	-	-	-	-	20,364	-	22,596
증감	△1	63	△1	-	-	-	-	2,772	-	2,833
'01.11.~'12.6.	121	18,679	645	320	167	7	1	111,767	1	131,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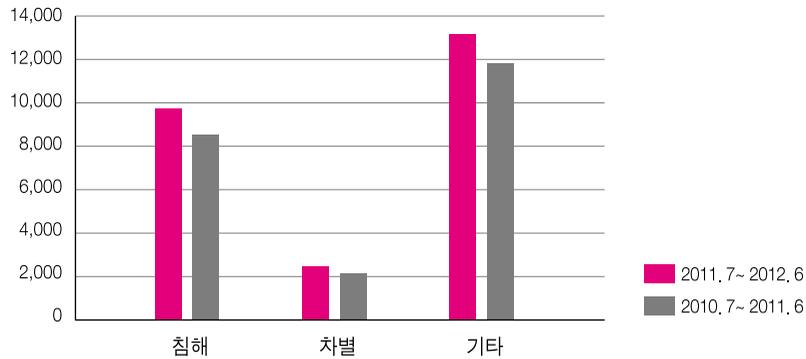


3. 유형별 상담현황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상담 중 기타상담이 13,213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는 인권상담의 영역이 사인간 침해, 회사 내 문제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측면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과 직결되는 인권침해상담과 차별상담은 동기 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인권침해상담의 증가율은 13.9%, 차별상담의 증가율은 13.7%였다.

〈표〉 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건, %)

구분	침해	차별	기타	합계
'11. 7.~'12. 6.	9,767	2,449	13,213	25,429
'10. 7.~'11. 6.	8,572	2,153	11,871	22,596
증감	1,195(13.9)	296(13.7)	1,342(11.3)	2,833(12.5)
'01. 11.~'12. 6.	52,739	13,608	65,361	131,708



4. 회신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인권상담은 사안이 복잡·다양하고 상담시간 또한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인권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구제를 받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권위는 1차적으로 상담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적극 모색하지만, 상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검토한다. 이번 분석대상에 포함된 상담의 경우 상담단계에서 종결된 사례가 15,844건(62.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진정접수(진정예정 포함) 5,138건(20.2%), 재상담 예정 1,784건(7.0%) 순이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상담내용 처리 결과 ('11. 7.~ '12. 6.)

구분	전화	대면	합계
합계	23,143	2,286	25,429
상담종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05	4,305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 / 종결	84	432
	진술내용의 현실성·신빙성 결여	59	218
	내담자가 상담만을 원함	387	6,771
	조사가능기간 초과	25	139
	상담으로 문제해결	232	1,451
	이미 진정한 상담	22	483
	구체적 주장내용 없음	42	426
	기타	158	1,619
	소계	1,414	15,844
타 기관 안내	보다 적절한 기관안내	161	1,506
	내담자가 타 기관 문의	11	72
	기타	13	18
	소계	185	1,596
진정예정	다른 방법으로 진정예정	33	1,847
	고려 후 진정예정	33	406
	서류 구비하여 진정예정	40	125
	조사대상자는 아니지만 내담자 원함	4	16
	사건추이 보고 진정예정	31	295
	재상담 후 진정예정	4	36
	기타	9	23
	소계	154	2,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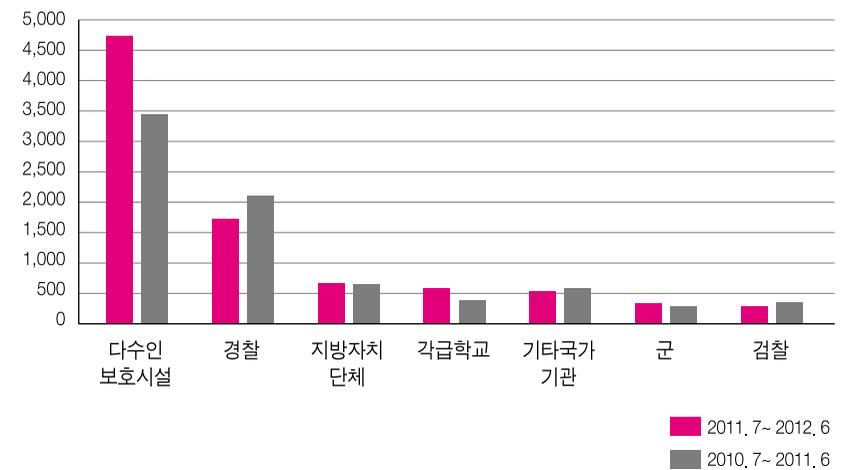
5. 인권침해 상담

구분	전화	대면	합계
재상담 예정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예정		214
	사실관계 파악 후 상담예정	24	225
	사건추이 보고 재상담 예정	33	705
	내담자가 상담 원함	22	471
	상담시간 부족 및 과다로 재상담 예정	4	48
	기타	5	121
	소계	1,696	88
진정접수	조사대상 아니지만 내담자 원함	42	75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사건	244	2,039
	조사대상은 불분명하나 위원회 판단 원함	57	211
	제도개선(사건을 위원회에 알리고 싶음)	9	15
	기타	24	50
	소계	2,014	376
기타	상담도중 전화 끊김		263
	조사담당자 안내	1	30
	상담도중 내담자가 자리를 뜰	6	14
	기타	62	760
	소계	998	69



〈표〉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

구분	'11. 7.~'12. 6.	'10. 7.~'11. 6.	증감	'01. 7.~'12. 6.
합계	9,767	8,572	1,195	52,739
검찰	292	349	△57	3,002
경찰	1,733	2,109	△376	14,444
국정원	13	14	△1	166
특사경	-	5	△5	108
지방자치단체	666	647	19	4,499
사법기관	127	187	△60	1,009
입법기관	-	4	△4	51
기타국가기관	538	586	△48	5,368
구급시설	240	227	13	1,830
다수인보호시설	4,751	3,451	1,300	17,458
상담전용-보호시설	-	3	△3	165
기타	275	276	△1	1,214
군	343	293	50	2,053
각급학교	590	396	194	1,148
공직유관단체	137	-	137	137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2	25	37	87



인권침해 상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수인보호시설이 4,751건(48.6%)로 가장 많았다.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진정함 설치 실태 등을 점검한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인권상담센터는 매년 정신보건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진정함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방문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개선조치가 잇따랐다.

2007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경찰관련 상담은 2008년 이후 다수인보호 시설에 1위를 내준 채 1,733건으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666건, 기타국가기관 538건, 검찰 292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구급시설은 5.7% 증가했다. 전체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동기 대비 1,195건 증가해 9,767건으로 집계됐다.

〈표〉 인권침해 상담의 내용별 현황

구분	'11.7.~ '12.6.	'10.7.~ '11.6.	'01.7.~ '12.6.
검찰 계	292	349	3,002
도·감청 등	1	2	7
압수수색(신체)	3	7	44
집회, 시위		1	7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 미통지		2	18
임의동행			1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		10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6	10	138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64	80	484
건강·의료권 침해/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5	7	51
체포, 구속, 감금	7	11	94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장시간 조사/편파 부당 수사	68	112	1,232
공소권 남용	20	25	229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 관리 등	26	19	113
알권리/정보공개	8	5	65
기타	82	65	495
생명권 침해	1		1
압수수색(주거)등		2	2
종교의 자유		1	1

구분	'11.7.~ '12.6.	'10.7.~ '11.6.	'01.7.~ '12.6.
경찰 계	1,733	2,109	14,444
불심검문/임의동행	20	49	447
도·감청 등	5	8	49
압수수색/과도한 신체검사	31	55	487
집회, 시위	13	35	244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 미통지	35	37	30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	3	33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315	488	3,127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313	418	2,269
건강·의료권 침해/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45	57	465
체포, 구속, 감금	66	57	545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장시간 조사/편파 부당 수사	324	465	3,805
기타	389	324	1,916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 관리 등	126	80	573
알권리/정보공개	23	20	140
생명권 침해	8	2	10
압수수색(주거) 등	14	7	21
종교의 자유	1		1
인터넷	1	1	2
유치장관련 인권침해	3	3	6
지방자치단체 계	666	647	4,499
위법/부당한 처분	160	185	1,069
부작위, 거부 등 소극적 처분	111	125	1,005
폭행/가혹행위	18	30	281
인격권 침해	145	158	949
개인정보/사생활 비밀 침해	91	65	539
알권리 침해	10	9	59
행정/제도개선	35	15	117
기타	96	60	480
기타국가기관 계	538	586	5,368
위법/부당한 처분	165	256	2,750
폭행/가혹행위	20	29	399
인격권 침해	84	112	735
사생활 비밀 침해	69	69	487
알권리 침해	11	5	89
기타	189	115	908

구분	'11. 7.~ '12. 6.	'10. 7.~ '11. 6.	'01. 7.~ '12. 6.
사법부	127	187	1,009
위법/부당한 처분	24	58	397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3	4	27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27	57	231
출입국 제한		2	11
피의사실 유폐/개인정보 관리 등	16	17	91
알권리/정보공개	4	4	22
행정/제도개선	13	7	45
기타	39	38	179
상담용-증인(증거)신청 기각			5
인터넷	1		1
구급시설	240	227	1,830
건강/의료	87	60	599
외부교통권 제한	10	14	140
조사/징벌/계구	18	31	172
폭행/가혹행위	40	54	328
처우관계/인격권 침해	37	33	250
시설/환경	4	18	96
기타	44	17	245
다수인 보호시설	4,751	3,451	17,458
다수인보호시설 계	4,751	3,451	17,458
불법/강제수용	1,395	1,250	6,412
폭행/가혹행위	366	328	1,903
외부교통권 제한	345	207	1,210
의료조치 미흡	160	106	654
강제노동	43	40	226
인격권 침해	366	177	928
시설/환경	151	131	704
기타	642	408	2,099
퇴원요청	1,283	804	3,322

구분	'11. 7.~ '12. 6.	'10. 7.~ '11. 6.	'01. 7.~ '12. 6.
군	343	293	2,053
군 계	343	293	2,053
법정질환 관리부실			1
면담불허			1
외부통신 제한			3
불심검문/임의동행		1	3
도·감청 등	1		3
압수수색(신체)	1	2	7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 미통지		1	1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장시간 조사/편파 부당 수사	9	9	63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47	70	496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58	44	205
건강·의료권 침해/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92	53	359
체포, 구속, 감금	2	2	11
부당한 사건분류			4
피의사실 유폐/개인정보 관리 등	12	3	19
알권리 침해/정보공개	5	2	11
생명권 침해	26	16	140
부당한 제도 및 처분	25	48	348
기타	60	39	368
상담용-개인정보누설		1	3
종교의 자유	1		1
영창관련 인권침해	4	2	6
학교	590	396	1,148
학교 계	590	396	1,148
인격권 침해	239	297	698
체벌	68	32	100
부당징계	41	10	51
기타	242	57	299
공직유관단체	137		137
공직유관단체 계	137		137
위법/부당한 처분	45		45
인격권 침해	21		21
폭행/가혹행위	1		1
개인정보/사생활 비밀 침해	14		14
알권리 침해	1		1
부작위/거부 등 소극적 처분	19		19
행정/제도개선	10		10
기타	26		26

6. 차별행위 상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다수인보호시설의 경우, 불법/강제수용 1,395건(29.4%), 퇴원요청 1,283건(27.0%), 폭행/가혹행위 366건(7.7%), 인격권 침해 366건(7.7%), 외부교통권 제한 345건(7.3%)의 순이었다. 2위를 차지한 경찰의 경우는 불리한 진술 강요/편파 부당수사 324건(18.7%), 폭행 및 가혹행위/부당한 장구사용 315건(18.2%), 폭언 및 욕설 313건(18.1%)의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 160건(24.0%), 인격권 침해 145건(21.8%), 부작위/거부 등 소극적 처분 111건(16.7%)의 순이었다.

한편 2012년 3월 21일 위원회법 일부 개정으로 공직유관단체와 사립학교가 새로이 위원회 조사대상으로 포섭됨에 따라 학교 관련 상담이 급증하였다(공직유관단체 관련 상담 증가폭은 미미). 학교의 경우 인격권 침해 239건(40.5%), 체벌 68건(11.5%)의 순이고,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 45건(32.8%), 인격권 침해 21건(15.3%), 부작위/거부 등 소극적 처분 19건(13.9%)의 순이었다.

〈표〉 차별행위 상담의 기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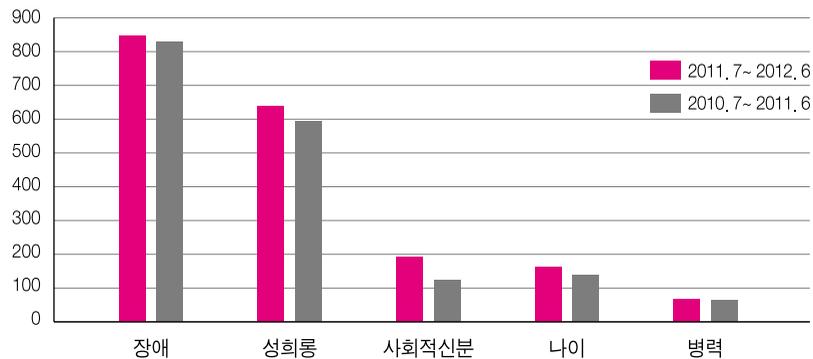
구분	'11. 7.~'12. 6.	'10. 7.~'11. 6.	증감	'01. 7.~'12. 6.
합계	2,449	2,153	296	13,608
검찰	6	13	△7	489
경찰	29	14	15	43
구금시설	3	5	△2	34
군대	21	17	4	99
기타 국가기관	140	131	9	1,222
지방자치단체	131	114	17	986
보호시설	47	16	31	129
교육기관	236	145	91	1,281
공공기관	209	124	85	974
사법인	610	650	△40	4,155
개인회사	395	360	35	1,794
단체	66	70	△4	319
사인	430	367	63	1,517
요양시설	13	8	5	23
기타	113	119	△6	543
성희롱	642	597	45	3,131

차별행위 상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법인(24.9%), 사인(17.6%), 개인회사(16.1%)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절반을 넘는다. 공권력 집행기관의 경우 교육기관(9.6%), 공공기관(8.5%), 기타국가기관(5.7%) 등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사유별 차별행위를 분석하면 장애차별 관련 상담이 전체의 34.9%를 차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표〉 차별행위 상담의 사유별 현황

구분	'11. 7.~'12. 6.	'10. 7.~'11. 6.	증감	'01. 7.~'12. 6.
합계	2,449	2,153	296	13,608
성별	68	39	29	442
종교	16	17	△1	112
장애	854	836	18	4,088
나이	164	141	23	1,061
사회적신분	192	123	69	1,313
출신지역	9	8	1	117
출신국가	58	65	△7	396
출신민족	2	3	△1	22
용모, 신체조건	28	22	6	199
혼인여부	16	11	5	94
임신·출산	45	27	18	205
가족상황	16	17	△1	108
인종	4	1	3	19
피부색	1	2	△1	7
사상, 정치적인견	3	7	△4	68
전과	33	15	18	200
성적지향	4	2	2	17
병력	67	64	3	433
학벌, 학력	32	26	6	211
기타	195	130	65	1,365
성희롱	642	597	45	3,131



〈표〉 차별행위 상담의 영역별 현황

구분	'11. 7.~'12. 6.	'10. 7.~'11. 6.	증감	'01. 7.~'12. 6.	
합계	2,449	2,153	296	13,608	
고용관련	소계	735	719	16	5,307
	교육	5	8	△3	51
	해고	105	115	△10	775
	모집	72	71	1	594
	배치	50	57	△7	464
	승진	23	27	△4	214
	임금 외 고품지급	30	25	5	179
	임금 지급	86	63	23	437
	자금용자	-	-	-	4
	채용	147	121	26	1,063
	퇴직	24	25	△1	195
정년	24	12	12	119	
기타	169	195	△26	1,212	
소계	536	464	72	2,919	
재화/용역	상업시설의 공급·이용	97	78	19	379
	용역의 공급·이용	169	131	38	933
	재화의 공급·이용	183	154	29	1,086
	주거시설의 공급·이용	30	22	8	145
	교통수단의 공급·이용	55	76	△21	357
	토지의 공급·이용	2	3	△1	19
소계	129	73	56	660	
시설 등 이용	교육시설의 이용	113	63	50	602
	직업훈련기관 이용	16	10	6	58
	소계	1,049	897	152	4,722
기타	1,049	897	152	4,722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명시된 3대 영역별로 보면 고용관련 차별이 가장 많았고 재화 및 용역에 따른 차별과 시설 이용 차별이 그 뒤를 따랐다. 고용 영역의 차별에서는 채용과 해고의 비중이 높았다.

7. 기타상담

〈표〉 기타상담의 사유별 현황

구분	'11. 7.~'12. 6.	'10. 7.~'11. 6.	증감	'01. 7.~'12. 6.
합계	13,213	11,871	1,342	65,361
사인간침해	2,613	2,468	145	14,360
회사	1,477	1,221	256	7,342
기타단체	253	339	△86	1,893
재산권	421	438	△17	2,650
법령제도개선	135	111	24	1,424
입법, 재판	412	416	△4	2,604
기타	4,352	4,337	15	19,053
국가기관(상담용)	758	602	156	3,926
인권위업무 문의(상담용)	1,448	871	577	5,366
위원회업무 불만(상담용)	355	337	18	2,274
법률문의(상담용)	551	524	27	3,267
인권위관련 제안(상담용)	103	105	△2	765
차별영역외	233	55	178	288
사립학교(상담용)	102	47	55	149

기타상담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이 아닌 상담, 위원회 업무에 대한 개인 의견, 법률 문의 등 다양한 사유들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내담자의 고충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인권상담 유관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NGO 등)과의 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해 내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12 인권상담사례집_인권상담사례집 개요

1. 사례집 어떻게 구성했나?
2. 영역별 사례 선정 배경

1. 사례집 어떻게 구성했나?

〈11-12 인권상담사례집〉은 2011. 7. 1~ 2012. 6. 30 기간 우리 사회에 대두된 대표적 인권 이슈들을 추리고 다음으로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들과 비교하여 14가지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25,429건의 전체 상담내용을 이 틀에 비춰 분석하고 최종 수록사례를 결정했다. 분석틀에 따른 항목은 아래와 같다.

번호	분석틀	주요 내용
1	형사절차	과도한 장구 사용, 신체의 자유 침해, 의료조치 미흡 등
2	구금시설, 공직유관단체, 법원	의료조치 미흡, 폭행 및 가혹행위, 인격권 침해 등
3	정신병원	적법절차 위반의 강제입원, 폭행 및 강박, 인격권 및 사생활 등
4	군대	가혹행위(성추행 포함), 의료조치 미흡, 군대 내 사망 등
5	학생인권	체벌, 간접체벌, 인격권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6	정보인권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유출, 생체정보 수집 등
7	장애인 차별	고용, 교육, 편의 미제공, 이동권 등
8	성희롱	공공기관, 직장,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9	나이 차별	모집·채용, 퇴직·해고, 교육·훈련,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이용
10	이주민 인권	강제단속, 강제퇴거, 임금체불, 결혼 이주여성, 난민 등
11	기타 차별	용모, 학력, 병력, 전과, 국적, 성차별, 혼인 등
12	사회적 약자	감정노동자, 경비원, 노숙인, 노인, 한진중공업, 강정마을 등
13	북한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인격권 등
14	기타	비판, 요청, 민원, 고충상담 등

2. 영역별 사례 선정 배경

1. 형사절차

수사기관에 의한 자유권 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목적의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과 국가 공권력이 직접 만나 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모았다.

2. 구금시설, 공직유관단체, 법원

지난 11년간의 위원회의 활동과 그에 따른 인권의식 향상으로 국가기관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구금시설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자유권 박탈을 넘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2012년 3월 위원회 법 개정으로 공직유관단체도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관련 사례를 추가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막말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모았다.

3. 정신병원

인권상담센터에 들어오는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신병원 관련 상담이다. 2009년 위원회가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용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

4. 군대

군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집단으로 일사분란한 지휘가 필요하다는 특성상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반 사회와는 달리 철저한 상명하복과 폐쇄성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용인되는 조직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명하복과 폐쇄성의 권위주의는 필연적으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군 내부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5. 학생인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양상에 대해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학생인권 자체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학생은 일방적인 훈육과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주체이다. 이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본다면 학교는 지금과는 다른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다.

6. 정보인권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의 삶이 보다 편리해진 측면도 있지만, 반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막론하고 개인정보가 더 쉽고 빠르게 외부에 유출되고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더구나 CCTV와 GPS 이용 확산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7. 장애인 차별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사회 구석구석에 많이 남아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어 본다.

8. 성희롱

위원회의 지속적인 조사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관련하여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성희롱은 단순한 일회성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남녀차별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와 여성을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문화가 달라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 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의식 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9. 나이 차별

2009년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존재한다. 특히 채용과 해고에 있어 나이 차별의 벽은 높다. 어떤 영역에서든 나이가 아니라 각 개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차별 시정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10. 이주민 차별

2012년 8월 현재 144만명의 이주민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다수는 우리 사회에서 불합리한 차별과 배타성을 경험했다고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의 윗세대들이 외화를 벌기 위해 이역만리로 일하러 나갔던 적이 있었음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웃에 있는 이주민들의 삶을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1. 기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차별의 사유로 19가지를 들고 있다. 위원회는 그간 여러 차례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했지만 아직도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한다. 인권상담센터에 어떤 형태의 차별 상담이 접수되는지 살펴본다.

12. 사회적 약자

우리 사회에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수준의 인권을 넘어 이제는 국가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삶을 요구할 수 있는 인권도 논의해야 할 시기이다.

13. 북한인권

북한인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 민족 모두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각 때문인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 상담은 거의 없으며, 단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입국 과정 또는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들만 간간히 접수되고 있다.

14. 기타

인권상담센터에는 위원회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충고,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 등에 관한 상담도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위원회는 낮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1-12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_01 형사절차

- 1-1 과도한 장구 사용
- 1-2 신체의 자유 침해
- 1-3 의료조치 미흡
- 1-4 폭행, 폭언 및 가혹행위
- 1-5 약자에 대한 조사 관행
- 1-6 불심검문
- 1-7 부당수사
- 1-8 적법절차 위반
- 1-9 피의사실 유포
- 1-10 기타

1-1 과도한 장구 사용

경찰이 뒷수갑을 세계 채워 너무 아파서 용변을 보았어요.

어느 음식점에서 주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2명 출동하였는데 순순히 경찰서에 따라가겠다는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000경장은 수갑을 더욱 세계 조였고 너무 아파 항문이 열려 배변을 했습니다. 배변을 했으니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고통이 느껴지도록 더 세계 수갑을 채워 패닉상태였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에 수갑사용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2011년 12월, 경찰에 수갑사용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갑 시 앞수갑 사용 원칙 명시, 수갑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압박하여 피체포자의 혈액순환이 방해받거나 그에 따른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진정을 접수할 경우 인권위는 경찰의 과잉 수갑 조임, 뒷수갑, 미란다 원칙 미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사사례]

경찰이 뒤로 수갑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본인 소유의 유람선과 그 안에 있던 약기에 대해 경찰이 본인이 아닌 불법영업자가 우선 점유자라고 하여 경찰과 2시간 여 이야기를 하던 도중 경찰이 갑자기 영업방해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꺾고 뒤로 수갑을 세계 채웠습니다. 본인이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경찰은 뒤로 수갑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목과 무릎을 다쳐 지금까지 4주 동안 집 근처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1년 12월 1일

인권위, 경찰에 수갑사용 규정 마련 권고

1. 수갑의 재질과 관련하여, 손목 상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내부에 실리콘 처리 등 상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이 부착된 수갑을 사용할 것
2. 수갑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수갑사용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피체포자가 움직여서 수갑이 저절로 조여지거나, 피체포자가 자해 목적으로 일부러 조이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중 잠금' 원칙 명시
 - 시갑 시 앞수갑 사용 원칙 명시
 - 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피체포자의 얼굴 및 수갑이 타인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함
 - 손목에 상처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피체포자의 경우 현저한 저항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수갑 사용 제한
 - 시갑 시에는 수갑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압박하여 피체포자가 혈액순환이 방해받거나 그에 따른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시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체포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신속히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2 신체의 자유 침해

검찰이 모발검사 한다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어요.

목회자입니다. 십수 년 전에 마약을 한 적이 있었지만 목회자가 된 이후에는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OO지검에서 본인을 부른 적이 있었는데 협조 차원에서 소변검사와 모발채취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여 갔더니 머리카락 40~50개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혐의가 없어 거부하자 수사관이 가위를 들고 40개 이상을 강제로 잘라냈습니다.

헌법상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 없이 경찰이 머리카락을 잘랐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헌법상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적법절차 위반, 자기정보 결정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 가혹행위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 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사사례]

분류심사원장이 원생의 세면, 치아를 검사하는 것이 인권침해인가요.

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입니다. 원장이 매일 아이들의 세면검사와 치아검사를 합니다. 분류심사원의 자원봉사자가 그러는데 아이들이 세면검사와 치아검사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인권위에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보도자료] 2011년 12월 2일

수용자에 대한 강제 이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OO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 강제로 이발을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OO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수용자에게 강제 이발을 지시한 교도관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교도관 직무규칙」 제33조(위생관리 등) 제1항에 교도관은 수용자들이 신체와 의류, 두발 및 수염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수용자의 협력의무 및 교도관의 지도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일 뿐 교도관이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의 정당한 지도에 진정인이 이를 거부했다면 정당한 지시에 대한 지시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진정인에 대해 강제로 이발을 하도록 지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1-3 의료조치 미흡

손가락 세 개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데 경찰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괴음을 하여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취중에 아마 엘리베이터에서 손가락 세 개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에 갔는데 본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세 개가 반 정도 찢어져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경찰은 수갑을 채워 놓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술 처먹고 그랬으니 넌 그래도 싸다”는 식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진 의료조치 미흡과 인격 모독 아닌가요?

의료접근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05조는 “경찰관서장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급양, 위생, 의료 등에 대하여 공평하고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는 “경찰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의 의료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된다면 인권위에 진정접수하여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의료접근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경찰이 무릎인대를 파열시키고 치료 요청도 무시한 채 유치장에 가뒀어요.

2010년 11월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과 실랑이가 생겼습니다. 이 때 경찰이 본인의 다리를 심하게 꺾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걸을 수도 없는 상태여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였는데도 하루 동안 유치장에 가뒀놓고 조사한 후 귀가시켰습니다.

[결정문] 2010년 7월 23일

의료조치 미흡 등 인권침해

(주문)

OO경찰서장에게, 진정 요지에 대하여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0. 17. 00억 앞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성명 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지구대에 갔는데 폭행으로 인해 숨을 쉴 수 없고 너무 아파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하고 수갑을 두 개나 채워 방치하였다.

(판단)

진정인이 28일간 치료가 예상되는 상처를 입은 점, 체포당시부터 진정인이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여 피진정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지구대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위와 동일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청하였던 것을 피진정인들이 들어 알고 있었으나 진정인이 병원치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수갑을 풀기 위한 핑계라며 의료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갑을 뒤로 채워 조사를 마칠 때까지 해제하지 않았던 점 등의 행위는 위 피진정인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진정인에게 의료조치 등 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점이 인정되며 위에 명시된 법령의 각 조항을 위반함은 물론,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한 의료접근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1-4 폭행, 폭언 및 가혹행위

경찰의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전방십자인대과열 등의 상해를 입었어요.

작년 OO기업에서 시위 중 전경 폭행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올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위 당일 도망가다가 20여 명의 사복경찰들에게 구타당했는데 당시 병원에서 갈비뼈에 이상이 있는 듯하다고 했으며 이틀 후 교도소 입감 시 갈비뼈가 부러진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수감 중 다리의 붓기가 빠지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어 외부진료를 나갔었는데 MRI 촬영 결과 전방 십자인대가 과열되고 발목 인대가 늘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의 시위 진압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제4조에서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시위 진압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 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 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사사례]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장애인을 폭행했어요.

술을 마시다가 친구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2~3명의 경찰이 출동하여 곧바로 본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려 하여 이에 항의하자 본인을 땅바닥에 패대기치고 발로 등을 짓밟은 뒤 손을 강제로 비틀어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본인은 등이 굽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의 등을 짓밟고 폭행한 것은 너무나 것 아닙니까?

경찰이 팔을 비틀어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주인과 요금 중간정산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오자마자 정확한 상황을 묻지도 않은 채 노래방 주인에게 돈을 주라고 해서 이에 항의하자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그 때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 네 명이 달려들어 팔을 비틀고 목을 밟아 팔이 골절되어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정문] 2012년 4월 13일

경찰관의 폭행

(주문)

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9. 9. 00:35경 천안시 OO동 소재 B(술집)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진정인에게 연행된 후, OO경찰서 OO지구대 앞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 되었는데, 위 현장에서부터 지구대 입구까지 일련의 연행과정에서 수갑찬 체로 심한 구타를 당하였고, OO경찰서로 인계 되면서도 경찰서 입구 등에서 폭행당하였다.

(판단)

진정인은 비록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경찰관이 진정인을 즉시 체포하였다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나, 체포 시에 수반되는 필요적 물리력의 행사가 아닌 한 체포한 이후에 감정적으로 진정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진정인이 이미 체포되어 수갑으로 신체가 결속된 진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발로 차서 넘어뜨린 행위는 체포 등의 형사절차가 아닌 사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약자에 대한 조사 관행

경찰이 미성년자를 조사하면서 범죄자 취급하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학교폭력 당사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밤 7시경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받고 왔습니다. 경찰은 아들에게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전화하지 마라, 누구누구를 만나지 마라, 휴대폰에서 통화기록을 다 삭제해라”고 하면서 반성문까지 쓰게 했고 조사받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를 조사하면서 부모에게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또 혐의가 있다는 추정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미성년자를 소환할 때는 보호자의 이해를 구해야 하고, 조사할 때는 보호자를 참석시켜야 합니다.

「소년업무 처리규칙」 제8조와 제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소환할 때는 보호자의 이해를 구해야 하고, 조사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밤에 조사하면서 사전에 부모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사건 당사자도 아닌데 추정만 가지고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 휴대폰 통화기록 삭제 및 전화 제한 등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 등에 대해 인권위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년업무 처리규칙」

제8조(소환시의 유의사항) 3.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할 때에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제9조(면접시의 유의사항) 3. 면접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경찰의 실적 쌓기에 아이들이 희생양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아들이 패싸움에 연루되고 나서 10개월 후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아들만 부른 것입니다. 다행히 나중에 아들의 연락을 받고 조사 과정에는 동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사받았던 두 명의 아이들 부모는 연락을 받지 못해 아이들만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의 무리한 조사 때문에 만삭의 아내에게 해가 될까 걱정이예요.

아내가 OO재단법인에 근무하고 있는데 재단비리사건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내의 사무실에 전화했을 때 본인이 만삭의 임산부라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엠블런스를 준비해 놓을 테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결정문] 2010년 11월 26일

청소년 피의사건 조사 시 보호조치 미흡

(주문)

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1. 피진정인은 2010. 2. 24. 23:55경 진정인의 미성년 자녀를 OO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여 조사하였고 동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조사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진정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조사 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판단)

경찰청 예규인 「소년업무 처리규칙」 제8조(소환시의 유의사항) 제3항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할 것이며, 특히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6 불심검문

경찰의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는 거 맞죠?

지나가는데 경찰 몇 명이 오더니 불심검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불심검문이 가능한 건가요? 경찰들끼리도 서로 “강제할 수 있다, 없다”를 반복하며 실랑이 하다가 본인이 불심검문을 거부하니깐 30분만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불심검문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경찰관은 범죄가 의심되는 일정 상황 하에서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목적과 이유, 동행 장소 등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상대방에게 불심검문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불심검문 요구에 대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전문생략).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유사사례]

노숙인이라고 함부로 불심검문 해도 되나요?

OO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불심검문을 당했습니다. 거부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신분증을 보자고 하였고 경찰은 자신의 이름과 소속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7 부당수사

경찰이 피해자에게 술 먹여 진술을 받고 아들을 중범죄자로 만들었어요.

아들이 살인미수 및 상습폭행 혐의로 OO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연행되었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 성격이 모가 나서 그간 폭행 건이 있긴 했지만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경찰에 신고된 바도 없는데 경찰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살인미수와 상습폭행을 한 것으로 검찰에 보고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친구들(피해자들)을 만나보니 수사관들이 “진술 안하면 너까지 엮어 버리겠다”는 식으로 강요를 했고 피해자들에게 3~4차례 술좌석을 마련하고 모텔까지 데려가는 등 강요와 접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불러준 대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피해자 매수와 같은 부당 수사를 통해 아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부당수사에 의한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67조 제2항은 경찰이 조사를 함에 있어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의사능력을 저해한 후 조사를 하는 등 부당수사를 했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여 부당수사에 의한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67조(임의성의 확보) ①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기가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방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함부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 있는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사사례]

경찰의 참고인 조사 때문에 괴로워요.

피의자인 본인의 친구와 관련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일 간 매일 전화가 오니 핸드폰을 켜 놓기도 두렵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가족상황과 가족의 직업까지 물어보는데 이걸 거의 협박 아닙니까?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건지, 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관방에 무단 침입한 경찰, 신분도 밝히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2주 전 여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자고 있었는데 22시경 경찰 셋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가 방을 잘못 들어왔다고 하더니 신분도 밝히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갔습니다. 아무리 경찰이라도 신분도 밝히지 않고 남의 방에 들어오고 사과도 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문] 2011년 9월 28일

체포영장 미제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주문)

1.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인 OO지방경찰청장에게,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청소년, 여성 등의 범주는 전문성이 있는 담당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진정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1. 피진정인은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인바, 2011. 6월 초부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오토바이 절도죄로 소환조사를 하면서 사전에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고 2011. 6. 19. 체포한 후에서야 그 결과를 알려준 것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부당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권리구제와 제도개선을 원한다.
2. 피진정인이 2011. 6. 19. 피해자를 오토바이 절도죄로 체포하면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

(판단)

1. 소년(19세 미만인 자)의 경우 성년과 달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소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소년범죄를 조사하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통화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핸드폰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자, 번호호출, 음성 메시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국 피해자의 모친과 피진정인간에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모 등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년범죄업무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8 적법절차 위반

경찰이 불시에 들이닥쳐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사진 찍고 집을 수색했어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OO경찰서 소속 경찰관 세 명이 들이닥쳐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제 얼굴을 사진 찍었고 그 중 한 명은 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방에 들어가 사진을 찍었는지 수색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참 뒤에야 나왔습니다. 경찰은 일을 다 끝내고 난 후 신분증을 보여주며 인근에 성폭력 사건이 있어 조사를 나왔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경찰의 조사 방법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108조도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때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도 없이 가택을 수색하고 사전에 소속과 수사의 목적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사진을 찍었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여 적법절차 위반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08조(임의의 가택수색)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 선박에 대하여 수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거지 또는 간수자의 임의의 승낙이 없는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유사사례]

몸에 문신이 있으면 경찰이 알몸사진을 찍어도 되는 건가요?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폭행사건 피의자를 은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경찰이 폭행사건 피의자를 조직폭력배로 의심하면서 본인도 조직폭력배로 의심하여 몸에 문신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본인이 있다고 하자 팬티까지 벗게 하더니 나체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장도 없이 전신사진을 찍어도 되는 건가요?

경찰에게 캐썬죄로 걸려 호주머니를 수색당하고 돈도 압수당했어요.

성인 오락실에 있는데 OO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단속을 나와서 손님들로부터 고압적인 자세로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항의했더니 영장도 없이 주머니를 뒤져 현금 73만원과 경품카드 145장을 압수하면서 “불법 환전으로 구속시킬 수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결정문] 2011년 10월 12일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 녹화진술에 의한 인권침해

(주문)

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에게 영상녹화시 피의자에 대한 안내 등 관련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2011. 8. 12. 국회 앞에서 반값등록금 요구 시위 중 경찰에게 연행된 후, OO경찰서에 조사가 할당되어 피진정인들에 의해 진술 녹화실에서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 되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구제조치 및 제도개선을 원한다.

(판단)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정인들을 영상녹화로 조사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의 영상녹화 사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이 진정인들의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요구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9 피의사실 유포

검찰청의 부주의한 우편물 발송으로 저의 개인정보가 공개됐어요.

그동안 뺑소니 혐의를 받다가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OO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의사건 처분결과’ 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우체통에 담겨 있었는데 그 편지봉투가 완전히 뜯겨져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검찰청에서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바람에 저의 개인적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걱정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7조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수사결과 통보 시에도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0 기타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군대 부하 부리듯 했어요.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경찰들의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참관하는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교육대상자들에게 “줄 맞춰서 서세요. 주머니에서 손 빼세요. 팔짱 끼지 마세요. 놀러 오셨어요? 교육받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라고 하면서 마치 군대에서 부하 부리듯 했습니다. 교육의 취지는 좋지만 경찰들의 태도가 너무 불쾌하여 여기저기서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들이 교육대상자들을 권위적인 태도로 대하여 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의 권위적인 태도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경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관행 개선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경찰의 권위적인 태도에 대해 인권위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관행 개선 권고를 한다면 이 경우 개별 진정사건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12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_ **02** 구금시설,
공직유관단체,
법원

2-1 의료조치 미흡

2-2 폭행 및 가혹행위

2-3 인격권 침해

2-4 외부교통권 제한

2-5 진정권 방해

2-6 공직유관단체에 의한 인권 침해

2-7 판사의 막말

2-1 의료조치 미흡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병을 키울 순 없잖아요.

아버지가 OO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아버지는 수감 이전부터 당뇨병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수감 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 교도소 의무과에서 검사를 해 보니 당뇨 수치가 40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교도소측에선 약 한 알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 아버지는 두 차례에 걸쳐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최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 정밀 검사를 받고자 했지만 교도소 측은 간이진단만 하고 별 다른 의료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수감 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는데도 교도소측에서 간이진단만 하고 별 다른 의료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인권위에 진정접수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법무부 예규 제821호)

제12조(환자진료) ①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아무리 교도소라지만 앉지도 못하는데 치료는 해줘야죠.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수감 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앉기가 힘들 정도로 허리 통증이 계속되어 적절한 의료조치 또는 병방 수용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수술 부분 이외에도 요추 2와 3에 대해 향후 1년 간 물리치료 및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1시간 30분 동안 발작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아들이 1시간 30분 동안 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가끔 와서 밖에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대네요. 장시간에 걸친 발작은 뇌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는데 걱정입니다.

[결정문] 2011년 7월 11일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주문)

OO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피진정인 2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피해자는 1심에서 8개월의 형이 확정된 후 OO교도소에서 5개월여 동안 수용되어 있던 중, 2010. 3. 12. 외부 진료기관인 제주시 소재 OO병원으로 이송 조치되어 간암말기 및 합병증으로 회생 불능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달 25일 사망하였다. 교도소 내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다.

(판단)

교도소의 의무관에게는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진정기관에 처음 입소할 당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간 기능 이상 소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간암 말기의 환자인 경우 환자의 적극적인 호소가 없었다 해도 황달, 복수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증가하였을 것이므로 피진정기관이 조금 더 주의 깊게 피해자를 관찰하였다면 외부의료시설로의 이송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2-2 폭행 및 가혹행위

교도관이 CCTV 없는 곳에서 폭행했어요.

남자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OO교도소에 10일간 구금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옆구리에 온통 멍이 들어 있어 물어봤더니 교도관이 CCTV가 없는 징벌방으로 끌고 가 엄청나게 때렸다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철저히 조사해서 그 교도관의 옷을 벗게 하고 싶습니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만일 교도관의 폭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유사사례]

소년원에서 밥을 많이 먹는다고 수시로 폭행을 당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동생이 폭행을 방조한 죄로 한 달 간 소년원에 있다가 며칠 전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년원에 있을 때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교사로 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교사는 “너희 같은 놈들은 밥을 먹는 것도 아깝다. 조금만 먹어라”라고 하면서 때렸고, 그리고 한 사람이 많이 먹어도 전체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했다고 교도관이 3시간 동안 포박했어요.

교도소에 있을 때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잘못을 시인 하라고 하길래 거부했더니 본인을 독방에 가두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채 손과 상체를 동시에 밧줄로 꽂꽂 묶어 3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퇴소한 이후에도 손목이 마비되었고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정문] 2009년 10월 26일

교도관의 폭언 및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주문)

OO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구치소에서 OO교도소로 이송되는 날인 2009. 6. 5. 피진정인 1, 2, 3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하였다.

(판단)

피진정인 1, 2, 3은 멀미약 지급을 요구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고 먹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수갑과 포승을 한 상태로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1, 2, 3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업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과잉대응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3 인격권 침해

여성수용자가 다 있는 자리에서 남성 수용자의 알몸 검사를 했어요.

사촌형이 얼마 전 OO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는 검찰조사를 받으러 외부에 나갔다 들어와도 무조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치소 직원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형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형은 사람들이 안보는 곳에서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요청했으나 직원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형은 여성 수용자들 앞에서 알몸으로 항문검사까지 받아 너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르면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 수용자들 앞에서도 알몸 검사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데 이성 수용자들 앞에서 알몸 검사를 받았다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해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93조(신체검사 등) ②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검사가 재판 도중 문신을 확인하겠다고면서 옷을 벗으래요.

OO법원 형사재판 법정에 협박죄 혐의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공판 검사가 재판 도중 방청객 앞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본인에게 “몸에 문신이 있나 확인하고자 하니 옷을 벗어봐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법정이라 어쩔 수 없이 팬티만 남기고 옷을 다 벗었습니다. 평생 이런 수치심은 처음이었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2-4 외부교통권 제한

교도소에서 서신왕래를 막았어요.

2년간 징역을 살고 한 달 전 출소했습니다. 교도소에 있을 때 당뇨가 심해져 외부 진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형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서신 담당이 뜯어보고 왜 자주 편지를 보내냐고 하면서 4회 정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수용자는 법이 규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서신왕래를 막아 외부교통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인권위에 진정하시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합니다.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①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유사사례]

마약범죄 피의자에게는 서신검열과 반송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교도관이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구치소 안에서 서신검사를 더욱 엄격히 하여 다른 수용자와는 달리 유독 반송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력을 프린트해서 보냈는데 이것도 전달해 주지 않고 반송했어요. 벌 문제도 없는 달력인데도 반송처리 한 것은 부당합니다.

[결정문] 2010년 9월 15일

교정 시설의 부당한 서신 검열로 인한 인권침해

(주문)

1. 법무부장관에게, ① 수형자의 서신 검열 및 수·발신 불허 사유를 법령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②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및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제29조를 수형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③ 이와 같은 원칙이 현장 교도소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서신관련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교정시설에 보급하고 담당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서신을 즉시 발송할 것과, 향후 이와 같은 부당한 처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직원 교육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권고한다.

(진정요지)

1. 09진인 ○○○○관련
2009. 11. 12. 평화운동 시민단체에 보낸 진정인의 서신을 ○○직업훈련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10진정 △△△△관련
2010. 2. 24. ○○경찰서장에게 보낸 서신 및 같은 해 3. 10. ○○경찰서장 및 영화감독 ○○○ 등에게 보낸 진정인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3. 10진정 □□□□관련
피해자 ○○○는 2010. 3. 12. 교도소의 부적절한 처우로 공황증이 악화되어 자신의 부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교도소의 검열제도 자체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국내 및 국제기준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검열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국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이 되는 서신에 대해서만 검열을 허용해야 할 것이며, 검열한 서신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형집행법」은 수형자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모두 서신을 보기 전에 검열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가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고,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944호) 제29조는 '소장은 법 제92조에 정한 금지물품 반입 방식을 위하여 모든 서신을 개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어서 법조항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되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검열을 허용한 법 제43조를 실질적으로는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서신의 검열을 너무 쉽게 허용하는 물론 검열을 한 물리적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법 제43조의 준수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5 진정권 방해

교도소에서 인권위 진정서 송달 비용을 내라네요.

금요일 저녁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일주일만에 풀려났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우표와 봉투값을 자비로 하라고 하여 대신 면전진정을 신청했습니다. 2009년부터 자비송부로 바뀌었다는데 맞나요?

교도소에서 위원회에 진정서를 송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우표값과 봉투값을 따로 내야 하는 것이 진정권 방해에 해당하는지 인권위에 진정접수하여 판단받아 보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 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 ④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교도소에서 인권위 진정서를 보내주지 않아요.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설거지를 하다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크게 다쳐 피부이식수술까지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수술 부위에 진물이 나는 등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편이 8·15 특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남편이 병세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여러 번 제출하였으나 교도소 측에서 편지를 검열하여 이를 외부로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2-6 공직유관단체에 의한 인권 침해

공기업에서 안전교육도 없이 위험약품을 다루게 했어요.

공기업인 OO연구실에서 아르바이트로 말의 혈장을 채취해서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다루는 약품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지시대로 일을 했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 본인이 어떤 약품을 쏟아서 그 약품이 공기 중에 노출되기만 했는데 본인의 입 안에서 피가 났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위험한 약품이 아니라고 했지만 의사가 특이체질의 사람이나 그 약품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신경계통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약품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키지 않고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은 건강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인권침해 행위도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2012년 3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인권침해 행위도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안전교육 미비와 위험약품 관리 소홀 등으로 신체의 자유와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실의 감사실이나 민원실에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으며 민사적인 해결방법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2-7 판사의 막말

[유사사례]

OO공사 전봇대 관리 소홀로 안전에 위협을 느껴요.

부산 OO구에서 통장을 맡고 있습니다. OO공사가 전봇대를 유선방송선에도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이후 유선방송 케이블이 전봇대마다 늘어져 있거나 잘려진 케이블선은 수거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네의 미관이 추해졌습니다. 골목마다 돌돌 말아서 놔두긴 했는데 침수도 되고 누전의 위험도 있어 장마철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장마철이 되기 전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막말하고 무시해요.

몇 개월 전에 민사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본인은 변호사 없이 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법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사가 “법도 모르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막말을 하며 무시했습니다. 또 상대방 변호사에 비해 본인에게는 의견 진술 기회나 시간도 적게 주고 제가 진술하는 도중 수차례나 말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인권위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소송에 관계된 사람에게 막말을 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면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인권위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유사사례]

경찰이 욕해도 되는 건가요?

저녁에 바람을 쐬러 차를 갖고 나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 어느 회사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경비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바리게이트를 치워 달라고 했는데 경비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한 경찰이 본인에게 수갑을 채운 뒤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운전석에 있던 경찰이 “씨발놈아 수갑 차니까 좋지? 너는 이제 좆됐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와서 본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까 본인에게 욕을 한 경찰관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네 엄마도 너 넣고 미역국 쳐먹었냐?”라는 욕설과 폭언을 재차 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이 기자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했어요.

기자입니다. 취재차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명 불상의 해군들과 000소령이 “미친 년”, “당신 북에서 내려온 기자냐?”, “좆같은 년” 등의 성희롱적이고 인격권 침해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보도자료] 2012년 3월 21일

인권위 조사구제 범위 대폭 확대, 공기업, 사립학교 등 인권침해행위 조사 가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2. 3. 21. 공포·시행됩니다. 국회는 2012. 2. 27.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사립학교를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인권위법 시행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704개(2011년말 기준)와 △사립학교 6,200개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결정문] 2011년 7월 27일

경찰의 폭언 등 인권 침해

(주문)

OO경찰서장에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순화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길에서 주운 반지를 금은방에 판 것과 관련하여 2011. 5. 17. OO경찰서에서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을 때 피진정인이 반말로 협박하여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기사를 부르겠다.” 고 하였더니, 피진정인이 “이 새끼가 싸가지 없는 것만 배웠구만, 옛날 같았으면 쥐어 패 버리고 반 죽여 버렸어, 나 성격 좇같은데” 등의 욕설을 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경찰서를 나온 후 병원치료를 받아야만 할 정도로 심한 인권침해를 받았다.

(판단)

진정인이 2011. 5. 17. 피진정인에게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인격 모독적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인격 모독적 언어사용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의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기관 및 법집행 공무원들이 피의자 등을 수사하거나 응대하면서 강압적인 어투 및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의 사례가 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해 오고 있다.

11-12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_03 정신병원

- 3-1 적법절차 위반의 강제입원
- 3-2 폭행 및 강박
- 3-3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 3-4 의료조치 미흡
- 3-5 외부교통권 제한
- 3-6 강제노역
- 3-7 진정권 방해
- 3-8 계속입원

3-1 적법절차 위반의 강제입원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어요.

OO정신병원에 알코올의존증으로 강제입원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로는 누나만 한 명 있습니다. 본인은 비혼의 기초생활수급자로 OO공사가 제공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간 기초생활급여와 장애수당으로 생활했으며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은 바는 없습니다. 올 2월 임대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돈을 누나가 모두 가져갔고 본인은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누나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습니다. 이후 누나와 매형은 몇 달째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인 경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의무자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아닌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누나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다면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신체의 자유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후략)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사사례]

정신병원에 21년간 입원해 있었어요.

조현증으로 21년째 정신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지금 있는 OO정신병원에 온 지는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부모님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형 한 명, 누나 두 명이 있는데 본인의 정신병원 입원에 동의한 보호자는 형입니다. 그런데 입원 전에 본인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지 형하고는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입원 시 보호의무자가 아닌 아내의 반대로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임중독으로 부모님의 동의하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습니다. 약 3주 후 주치의가 퇴원해도 좋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본인 몰래 병원에 와서 주치의를 만나고 퇴원동의를 해주지 않아 퇴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원에 동의한 부모님은 퇴원에 반대하지 않으시는데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도 아닌 아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퇴원을 못하는 건 부당합니다.

3-2 폭행 및 강박

[결정문] 2011년 11월 10일

부당한 강제입원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친족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도 OO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23.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동생들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OO시 소재 OO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피진정인은 당시 보호의무자 입증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인권침해이다.

(판단)

입원에 동의한 이들이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동생들이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의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생들로부터 입원동의 서명만을 받았을 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병원 직원의 폭행으로 틀니가 박살났어요.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때 보호사 두 명이 남편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병원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에 의하면 그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호사들이 때려서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내리지 않는다면 뒤에서 밀어 남편이 바닥에 넘어졌고 넘어진 남편을 보호사들이 짓밟아 그 과정에서 틀니가 부러지고 입안에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틀니 없이 한 달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보건법」 제43조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정신병원의 직원이 환자를 폭행하여 틀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침해 여부를 판단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가 부러지는 사고에 대한 의료조치나 음식물 섭취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 의료접근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43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②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3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유사사례]

정신병원 보호사가 새벽에 씻는다고 7시간 동안 묶었어요.

며칠 전 새벽 3시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런데 보호사가 새벽에 씻는다고 반말로 뭐라 하길래,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보호사가 저를 보호실로 데려가, 3명의 보호사가 함께 저를 침대에 눕히고 양 팔과 두 발목을 침대에 묶었습니다. 그 상태로 7시간 동안을 방치했습니다. 그 동안 저는 묶인 채로 2~3번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사가 하도 때려서 다른 보호사가 말리기까지 했어요.

보호사에게 “담배를 주문했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 담배 좀 달라” 고 했더니 갑자기 보호사가 본인을 독방에 데려가 묶어놓고 머리, 어깨, 무릎 등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다른 보호사가 말렸는데도 계속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맞아서 지금 제대로 걸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산책 후에 온 몸을 수색해서 너무 불쾌해요.

본인이 입원 중인 정신병원은 오전과 오후 하루에 두 차례 산책시간을 가집니다. 산책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가기 전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몸수색을 하는데 주머니만 뒤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위아래로 훑고 허벅지, 성기 밑까지 수색하여 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산책공간은 외부와 접해 있지도 않고 경비가 지키고 있어 나갈 수도 없는데 이런 식의 수색은 너무 불쾌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은 제2조에서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책 후에 몸을 수색하는데 주머니만 뒤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 특히 성기 밑까지 수색하여 수치심을 준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유사사례]

정신병원 직원이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사물함을 막 뒤져요.

일주일 전쯤 조울증과 자살시도를 이유로 정신병원에 자의입원했습니다. 입원할 당시 병원 측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면서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모두 압수하였고 본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수간호사가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개인사물함을 뒤져 자살과 관련 없는 담배 두 보루를 압수해 갔습니다.

환자들 옷을 벗게 하여 알코올류 소지여부를 검사하면 문제될까요?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은 외출·외박을 다녀올 때 술을 숨겨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코올 소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속탐지기를 설치해도 플라스틱 병에 술을 넣어 오는 경우는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손으로 더듬어 검사하자니 손이 성기 등에 닿을 수 있어 그냥 환자들에게 옷을 벗어보이게 할 생각인데 이것이 법률위반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요?

[결정문] 2010년 7월 19일

보호사의 폭행

(주문)

1. OO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2. OO군수에게, 본 진정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OO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OO병원 보호사인 피진정인은 2010. 5. 26. 진정인의 뺨을 3회 때렸다.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정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폭언을 하여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의 신분은 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사라는 점,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진정인이 흥분한 상황이었다면 보호실 격리를 통해 안정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하여 진정인을 제압하려고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폭행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 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4 의료조치 미흡

정신병원에서 염증치료를 제대로 안 해줘요.

부인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본인은 선천성 발가락 기형으로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3개월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약 열흘 전부터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병원 측에 외부진료를 요청하여 정신병원과 연계된 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로는 발가락에 핀이 박혀 있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라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를 통해 간호과장에게 수술한 병원에 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간호과장은 알았다고 말만하고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신병원에서 의료조치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입원한 내담자의 퇴원을 도와주거나 내담자가 원하는 병원으로의 이송조치까지 도와주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유사사례]

폐결핵 수술을 받고 정신병원에 재입원했는데 외부전문의 진료를 받고 싶어요.

본인은 폐결핵 수술을 받은 후 정신병원에 재입원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래, 해소, 천식, 기관지염 등이 의심되어 호흡기 질환 전문의로부터 진찰을 받고 싶는데 정신병원에서는 외부 진료를 허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종양 제거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2010년 여름 부비동종양 진단을 받은 후 수술비용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 2개월 전 가족들이 수술을 시켜준다고 하더니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지금 눈과 코 사이에 종양이 나서 숨을 쉬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빨리 부비동종양 제거 치료를 받고 싶는데 병원과 가족들이 외부진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정문] 2012년 5월 25일

정신병원 의료조치 소홀

(주문)

OO검찰청장에게, 진정인의 입원 중 발생한 상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과실에 대해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진정요지)

1. 진정인은 OO의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 2011. 9. 26.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4층에서 추락하여 골절을 당했고 눈 등을 크게 다쳤다. 사고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이를 동안 강박 조치하였고 가족과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2. 진정인은 병원 탈출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 외부진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묶어 놓는 등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피해를 입었다.

(판단)

추락 사고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피진정인이 상처 치료를 위한 조속한 조치나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을 하지 않고, 관련사고 사실도 해당 의료기관에게 알리지 않아 진정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제15조 제2항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추락사고 이후 진정인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체적인 검사나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상처 부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점에 검사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조치를 미루는 등 방치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방치 등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5 외부교통권 제한

열 통의 편지를 부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정신병원에서 한 통도 안 보내줬어요.

최근 한 달 간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총 열 통의 편지를 부쳐달라고 간호과장에게 썼는데 나중에 퇴원하고 보니 간호과장이 말로만 그랬을 뿐 실제로는 아예 부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들 중에는 집과 장인, 장모, 딸, 직장 상사 등에게 삶에 대한 소회를 담아 애절하게 쓴 내용도 있었고 구청장에게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 퇴원할 때 보호자에게 한꺼번에 넘겨줬다고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통신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 달간 총 열 통의 편지를 부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예 한 통도 보내지 않았다면 이는 포괄적인 통신 제한으로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 시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

제2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병원에서 2중 동안 면회나 전화통화를 안 시켜줘요.

고등학교 2학년인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는 지능이 낮고 특하면 달리는 차에 뛰어들려고 하는 등 행동에 문제가 있어 누나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인 조카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는 건 가능했지만 2중 동안 면회나 전화통화는 안시켜줬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의 콜렉트콜 전화로는 법원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법원에 인신보호제도 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기 며칠 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곳 병원의 전화는 콜렉트콜만 되므로 법원에 전화하여 본인이 직접 판결문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정문] 2012년 3월 5일

부당한 통신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주문)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입원환자의 통신 및 면회의 자유 등 일반 행동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거나 병동 운영을 위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병동 규칙을 개선할 것, 통신 등 행동자유 제한은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 및 그 취지에 따라 제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사유와 최소 범위 안에서만 실시하고, 이에 관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과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1. 피진정인은 2011. 1. 진정인을 부당하게 입원시켰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기간 동안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판단)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을 비롯한 모든 환자들의 전화사용과 면회를 입원 후 1주일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등 구체적인 기록 사항을 임의로 마련한 병동 규칙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입원 후 1주일이 경과한 뒤에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보장해야 할 전화사용에 대해 사용 횟수와 시간 등을 임의로 제한하고 그러한 제한 사유로서 전화사용으로 인한 개별 환자의 문제점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된 지시와 기록 등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입원환자들을 위한 의료적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은 환자들에 대한 행동 제한에 따르는 기록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3-6 강제노역

환자에게 청소와 배식을 시키고 하루 일당으로 천원을 줬어요.

본인은 알콜의존증으로 OO병원에 입원했다가 2~3주 전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을 때 환자들에게 강제로 아침부터 병실 안 걸레질을 하게 했고 이후에는 식사 배식과 식당 바닥의 대걸레질을 시켰습니다. 본인에게는 배식을 시키고 하루에 천 원씩 계산하여 보름간 일한 비용으로 1만 5천원을 주었습니다. 이거 강제노역 아닌가요?

치료 또는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단순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46조의 2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입원환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 또는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일을 시켰다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중략)..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정신보건법」

제46조의2(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정신병원 원무과장이 치매환자들 대소변을 받아내게 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모친의 동의하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원무과장이 본인에게 치매환자들 간병인 역할을 하게 하여 한 달에 10만원을 받고 두 달 열흘간 대소변을 다 받아냈습니다. 원무과장이 자신을 도와주면 6개월 만에 퇴원시켜 주겠다고 하여 간병인 일을 24시간 하게 된 겁니다.

[결정문] 2010년 9월 10일

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병동 내의 청소 및 배식은 입원환자들의 치료 또는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OO군수에게,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에도 입원환자들에게 청소와 배식을 전담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피진정인 병원은 입원환자들에게 강제로 화장실 및 복도 청소와 배식을 시키고 있다. A병동은 5개 병실의 환자들이 순번제로 복도, 거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B병동도 마찬가지로 병실 순번제로 청소를 하고 있다. 청소를 하기 싫은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순번제이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청소를 하지 않으면 다른 환자들이 청소를 할 수 밖에 없어 눈치가 보인다. 밥 배식은 간호사, 국 배식은 환자, 반찬 배식은 간호사와 환자가 담당하고 있다.

(판단)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병원의 입원환자들에 의한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은 정신과 전문의의 치료 계획과 프로그램 하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단순노동이나 근로에 불과하다.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이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 또는 도움이 된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진정인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진정인은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작업치료나 직업재활로 보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업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환자들에게 청소와 배식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

3-7 진정권 방해

정신병원에서 진정서를 인권위로 보내지 않아요.

같이 살지도 않았고 생계비도 지원하지 않는 형들이 129 응급이송단을 불러 본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폐쇄병동에 입원되는 순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불가능했고 입원 후 보름이 지나야 전화통화가 가능했으며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나야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 입원 중 진정서 세 통을 작성하여 진정함에 넣었는데 진정함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으며 봉합용 봉투도 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진정서를 인권위로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 아직 인권위에 도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진정서를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시설측은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법 시행령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국가인권위원회 예규 제46호)에 따라 다수인보호시설은 투명 혹은 반투명의 인권위 진정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진정함 옆에 진정서와 봉합용 봉투, 그리고 필기도구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측은 진정함에 투입된 진정서를 지체 없이 인권위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 측에서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해서 진정권 방해 여부를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 ④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정신병원에서 인권위 진정을 방해해요.

정신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인권위 진정함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오늘 사회복지사가 진정서를 수거해 가면서 인권위는 본인의 보호자가 아니므로 편지를 그냥 보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로 편지를 보내기 전에 먼저 주치의와 면담을 한 후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결정문] 2011년 7월 22일

진정함 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주문)

OO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진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진정함 및 진정서 양식 등을 철저히 비치할 것과 피진정인 등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피진정 병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함을 휴게실에 설치하고 있으나, 진정서 양식과 편지봉투, 필기도구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환자들의 진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 제1항,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피진정인은 입원환자들이 자유롭게 진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병동 내 진정함 주위에 진정서 양식, 봉합용 봉투, 필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하고, 매일 진정함을 점검하여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11. 6. 30. 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있기 전까지 병동 내 진정함 주위에 진정서 양식, 봉합용 봉투, 필기도구 등을 비치하지 않았고 진정함 내에 있는 서면을 7일간 방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8 계속입원

정신병원에 13년째 입원중입니다. 퇴원하고 싶어요.

스님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래 13년째 입원 중입니다. 보호의무자는 00시 장입니다. 올 2월 병원의 이름이 바뀐 이후 해당 시 사회보호위원회에서 병원에 와서 처음으로 계속입원 심사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만 했을 뿐 누가 와서 심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체의 자유 침해, 적법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게 계속입원의 사유와 퇴원심사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3년 동안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채 정신병원에 계속입원되었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셔서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 위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 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8개월이 지났는데 계속입원 심사를 받지 못했어요.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강제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는 아버지와 성년의 딸입니다. 입원 후 6개월이 지나면 계속입원 심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정문] 2011년 7월 22일

퇴원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주문)

- 00정신병원장에게, 진정인을 지체없이 퇴원시킬 것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의입원환자가 퇴원 요청을 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퇴원조치하도록 피진정인 등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00시장에게, 향후 피진정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8. 8. 30. 자의입원 형식으로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1. 2. 경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 병원 소속 진료과장인 피진정인에게 수차례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

(판단)

자의입원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치료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하고 환자의 퇴원을 불허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자의입원환자가 퇴원 요청 시 지체없이 퇴원조치하여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1-12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_ 04 군대

- 4-1 가혹행위(성추행 포함)
- 4-2 의료조치 미흡
- 4-3 군대 내 사망
- 4-4 군 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



4-1 가혹행위(성추행 포함)

군대 선임이 괴롭혀요.

아들이 자대배치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선임의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어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선임이 아들을 40명 부대원들 앞에 세워놓고 기합을 주고 지금까지 3개월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선임은 다른 사병을 때려서 영창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면서 영창에 한 번 갔으니 두 번 가도 상관없다며 대검으로 아들을 쥘 것처럼 위협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검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라고 협박해 놓고서는 오히려 자기가 아들 때문에 괴로워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보고를 하여 아들이 관심병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군에서의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가혹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훈령에서도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군에서의 선임·동료들에 의한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진정시 인권위가 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821호)

제5조(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 7호 기타 : 구타·가혹행위 사고 발생시 차상위 지휘관 보고, 수사 의뢰, 징계 의뢰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를 은닉한 자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등 강력히 처벌

[유사사례]

해병대에서 기수열의 당하고 있어요.

본인은 해병대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특기병과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2주 정도 지나서 업무인계를 받으면서 간부에게 어떤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것이 간부에게 고지절하였다는 식으로 대대전체에 소문이 나고 그 이후로 군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선임들이 본인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부대원들에게 본인과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하여 현재 기수열의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대 전에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죄송한 마음에 부모님께는 군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기 한 명만이 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다른 동기들은 선임이 무서워 다들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성추행 피해자를 오히려 왕따시키고 괴롭혀요.

아들이 자대배치를 받은 후 같은 내무반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중대장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중대장이 묵살했습니다. 다른 부대에 원사로 있는 지인을 통해 대대장에게 보고하여 관련 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9박 10일 동안 영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영창에서 나온 후 바로 옆 부대에 재배치를 받아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장교들이나 같은 내무반 선임들은 오히려 이 사건 이후 아들을 더욱 쌀쌀맞게 대하고 욕설을 하고 괴롭힌다고 합니다.

[결정문] 2011년 11월 2일

육군 OO사단 이병 폭행·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주문)

육군 OO사단장에게,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구타·가혹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 1-8과 지휘감독책임자 1-6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사 및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것
2. 병사 및 지휘관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병사 및 지휘관의 부대배치 및 임명

(진정요지 및 직권조사의 배경)

“피해자 1은 2011. 8. 26. 자대배치 받은 두 달만에 사망하였는 바, 선임병에 의한 구타 및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1과 유족이 사망 전 부대에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부대에서는 경미한 구타사건으로 처리하고 피해자 1을 다른 중대로 배치하였으나 재차 가혹행위를 당해왔다”는 진정이 제기되었고, 위원회의 기초조사 결과 추가적인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개시하였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현재의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2. 구타·가혹행위 및 사고예방을 위한 병력결산 및 소원수리제도가 일선 부대장의 재량사항으로 위임되어 있고 해당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등 관리의 부실이 있어 보이므로 세부사항을 명문화 하는 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병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병분대장에게 부여된 열차려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2 의료조치 미흡

중대장이 무릎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아들에게 계속하여 심한 훈련을 시켜 결국 무릎 연골을 들어냈어요.

군에 있는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인근 병원에서 두 차례 진료를 받고 MRI 촬영까지 한 결과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OO병원에서 수술날짜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였는데도 중대장은 아들이 피병을 부린다며 계속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은 무릎 연골을 들어내는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군에 입대하고 인성검사를 한 결과 정신과적 문제 의심, 복무 부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하여 사랑나눔이 등급 A급(관심사병)이 되었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동기를 구타하여 영창에도 다녀오고 충동조절이 잘 안되어 군 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한 적도 있는데 군병원에서는 아들이 피병을 부린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탈영으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에서도 아들의 정신질환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 복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권, 의료접근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에 복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건강권, 의료접근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적기·적시의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할 것, △진료기록 성실 작성 및 보관의무 강화, △군병원과 부대 간 연속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구축, △민간병원과의 원활한 협진제도 마련, △군내 필수 의료장비 구비 등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군이 군복무중 생긴 질병에 대해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진정을 통해 인권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유사사례]

위가 아픈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위 근처에 종양까지 생겼습니다.

아들이 현역으로 복무 중입니다. 아들은 군 복무중 위가 아프다고 여러 차례 군에 얘기했는데 군에서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고 병명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 결국 휴가를 나와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심장부정맥이 의심되니 대학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으라는 권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위염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고 식도와 위가 만나는 자리에는 종양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4-3 군대 내 사망

ROTC 장교로 임관한 아들이 자대배치 받고 3개월만에 사망했어요.

아들이 ROTC 장교로 임관하고 자대배치를 받은 지 3개월 뒤 부대로부터 아들이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아들이 숲속에서 총을 이용해 자살한 상태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아들의 스마트폰을 검색해 보니 중대장의 가혹행위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아들이 몹시 힘들어했던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망 하루 전에 누나에게 전화해서 카메라를 보내 달라고 하였고, 사망 당일에는 지역의 이장과 어촌계장 등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이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신에게 연락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봐도 아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중 가혹행위, 과도한 업무 등으로 사망한 경우 신체의 자유 침해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는 군복무중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나 간부들의 신상관리 미흡 등 군내부적 원인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장병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살”로 분류하게 하는 현행 「전공사상자분류기준」을 개정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사사례]

군복무 중이던 아들의 사망 은폐 의혹 진상을 규명해 주세요.

아들이 용산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실종된 지 30여일 지나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군은 자체 수사결과 번사(變死)로 결론지었습니다. 군에서는 익사라고 하는데 폐에 물이 하나도 없고, 두개골에 피멍이 있는데도 군은 그냥 피가 물린 것이라고 하는 등 수사내용에 의혹이 많습니다. 아들에게는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주십시오.

[결정문] 2011년 5월 4일

군대 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주문)

1. 국방부 장관에게, OO훈련소 지구병원의 민간의료조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적정하게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배치할 것을 각각 권고한다.
2. OO훈련소장에게,
 - 가.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의 외진 시 관련 의료기록의 송부를 의무화할 것,
 - 나. 보호관심사병 지정 및 관리와 전주소 활동관리 강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
 - 다. 응급환자 발생 시 그 조치 및 진료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제반 사항들을 정비할 것을 각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의 조카인 피해자는 OO훈련소 OO교육연대 O중대 O소대 O분대 소속 훈련병으로, 2011. 2. 27. 11:40경 위 훈련소에서 의사자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중이염에 대한 군의관의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자, 지휘관들에게 민간병원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소대장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중병이 아닌데도 훈련을 기피할 목적으로 진료를 희망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혼을 냈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이상 징후를 보이는 피해자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심한 상실감과 절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 당일 피해자의 행적관리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원한다.

(판단)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중이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민간 병원에서의 치료를 받으려면 OO병원 군의관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진정인 1은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료를 위하여, OO병원 군의관에게 피해자의 요청사항이나 진료기록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나, 위 피진정인은 부주의하게 위와 같이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OO병원 군의관 대위 000은 피해자에게 이명 증상에 대한 처방만 하였던 점, 피해자가 훈련병 신분으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일정기간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점, 피해자가 총 9회에 걸쳐 중이염 관련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처방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고통을 호소하며 수 회에 걸쳐 자신이 신뢰하는 민간 병원의 진료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원하는 치료 조치를 적시에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훈련소 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4-4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

멀쩡하던 아들에게 군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했어요.

아들이 말년휴가를 나왔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운동을 하러 나간 아들이 OO백화점의 방화문을 부수려다 발견되어 경찰서에서 헌병 조사를 받고 그 날 바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되어 지금까지도 병원에 있습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군에 가서 그 지경이 되었으니 군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다들 모른다 고만 하고 아들과는 현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질 않으니 사실관계를 밝힐 방법이 없어 답답하고 분할 따름입니다.

피해사실을 구체화하여 인권위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과 군 복무의 인과관계, 즉 정신질환 발병 원인이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나 구타 또는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한 것임에 대한 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올해 법원에서도 군복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정문] 2010년 8월 23일

군대 내 사망으로 인한 인권침해

(주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 등 관련 소송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0. 4. 14. 07:55경 전방 철책선 경계군무 중, 원인불상의 총기사고로 가슴 2발, 허벅지 1발, 손가락 1발의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유서가 없고 피해자가 사망 직전 가족과 일상적인 통화를 하였으며 다수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볼 때, 소속 부대원에 의한 타살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겉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나 사건은폐 및 편파수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동수사과정에서부터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의 보장 및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판단)

소속부대의 대대장 등 지휘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신병관리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선임병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 이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및 같은 규율 제24조 제3항(고충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병간의 폭언 등 부당한 사적 제재 금지와 이에 대한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1-12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_ 05 학생인권



- 5-1 체벌
- 5-2 간접체벌
- 5-3 인격권 침해
- 5-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침해
- 5-5 학교폭력
- 5-6 집단 따돌림(왕따)
- 5-7 휴대폰 사용 · 소지 금지
- 5-8 용모 규제
- 5-9 자율학습 강요
- 5-10 임신, 출산과 학습권

5-1 체벌

교사의 폭행으로 초등학생의 코가 찢어졌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담임교사가 일상적으로 학생에게 손찌검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담임교사가 한 여학생의 목덜미를 수차례 내리쳐 학생의 얼굴이 책상에 부딪히는 바람에 코가 찢어져 다섯 바늘을 꿰맸다고 합니다. 교사는 학교 측에 알리지도 않고 쉬쉬하고 있으며 피해자 엄마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조심스러워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담임교사가 상습적으로 학생을 폭행하여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령 위반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진정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받아 볼 수 있으며, 제3자 진정도 가능합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유사사례]

초등학교 교사가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구둑발로 차기까지 해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구둑발로 차는 등 심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간 반 아이들 여러 명이 맞았다고 합니다. 전에도 교사가 심한 폭언을 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민원을 낸 적이 있는데 그 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줘서 전학까지 시킨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직접 진정을 제기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폭행해 놓고 전학가래요.

아들이 공립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아들이 불손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의자에 앉아있는 아들의 목을 졸라 아들이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목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대들면서 심하게 반항하였습니다. 다음 날 가해교사는 학교에 임미를 불러 앞으로 계속 교직생활을 해야 하니 좋게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도위원회를 열어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으면 퇴학처리 하겠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초등교사가 남은 우유를 학생의 머리에 부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이 급식실에서 우유를 마셨는데 딸은 우유를 다 마셨고 옆 친구는 우유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딸이 우유를 남긴 것으로 착각하고 딸을 혼내면서 우유를 의도적으로 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교사는 처음에는 실수로 우유가 기울어져 흘렸는데 우연히 딸이 그 아래에 있었던 것뿐이라고 말하였으나 나중에는 교육적인 목적에서 일부러 부었다고 했습니다. 교사의 발언을 녹음도 해했습니다.

[결정문] 2010년 11월 29일

교사의 학생 폭행

(주문)

- 00시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00중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교직원에게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학생이 열쇠를 복사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교사가 체벌을 가해 골절상을 입혔으며, 학생 및 부모에게 치욕적인 욕설과 막말을 하였다.

(판단)

피진정인이 학생에게 가한 체벌 및 언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교육적 지도방법을 벗어난 행위이며,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를 다섯이나 넣고 말이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피진정인이 공무원의 친절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제63조에 반하여 학부모인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2 간접체벌

차라리 한 대 때려주세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벌점제를 실시하면서 수업시간에 떠들면 벌점 2점이 부과되고 총 5점이 되면 체력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체력훈련이란 오리걸음으로 학교 운동장을 30바퀴를 돌고 그런 다음에 전력질주를 하고, 2인 1조로 '엎드려 뺨쳐'를 한 상태에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느니 차라리 한 대 맞고 싶은 심정입니다.

간접체벌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간접체벌'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 등에서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고통에 비해 더 안전하거나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나 비교육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체벌' 허용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을 통해 간접체벌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2년 8월 3일

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의결하고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7개 시·도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잇단 학생들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학생인권에 대한 진정 사건도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학생 인권교육 강화,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학생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의견 수렴 절차 마련,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학생의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보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교원의 교권 존중'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폭력으로 부터 안전보장,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보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를 위해, △처벌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에서는, △교육주체간의 소통 강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교원의 역할 강화,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 졸업 전 삭제 또는 중간 삭제 및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활용 등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권고사항이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국민과 교육주체들의 인권의식과 감수성이 향상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3 인격권 침해

교사가 조카가 싫은 아이는 손들어보라고 했어요.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발달이 조금 늦은 면이 있긴 하지만 착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약간 늦되다 보니 손 들고 질문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는 조카가 손 들고 질문을 하는데 교사가 “OO를 싫어하는 애들은 모두 손을 들어라” 고 했습니다. 처음에 친한 친구 두세 명은 손을 안들었는데 교사가 왜 손을 안드냐고 물어봐서 그 친구들도 눈치를 보며 뒤늦게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고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행동특성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모욕감을 주고 친구들간의 불화를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강요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여 인격권 침해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

교사가 모의재판을 열어 딸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딸이 초등 6학년이고 남편은 OO자동차 회사 해고자입니다. 교사가 OO회사 해고자 자살기사가 나올 때마다 신문을 오려서 읽어보라고 주고 ‘뭐 느끼는 게 없냐?’ 고 물어보는 통에 딸은 움츠러들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사와 급우들이 욕설과 왕따를 하면서 괴롭혀 결국 딸은 전학을 갔습니다. 심지어 교사는 교단 앞에 딸을 불러 세워놓고 모의재판을 하며 반 친구들에게 “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애의 나쁜 점을 이야기해 봐라.”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험 성적순으로 반 배정을 하다니 너무합니다.

아들이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학교에서 각종 시험을 볼 때 반 배정을 석차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5개 학급이 있는데 전교 1등부터 40등까지는 1반, 전교 41등부터 80등까지는 2반인 식으로 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 배정을 하면 하위권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정보 침해

공립고에서 성적표를 게시관에 붙여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공개했어요.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딸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의 교실 뒤편 게시관에 학생들의 성적표를 붙여 둔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딸아이의 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학교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성적표를 공개하여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표는 진학 등을 이유로 본인과 학교측 이외에는 공개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인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성적에 의한 한줄 세우기로 인해 성적이 낮은 학생에 대한 낙인과 집단따돌림(왕따)의 문제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성적표를 게시관에 붙여 공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유사사례]

교사가 학생의 가방을 검사하고 고대기를 빼앗았어요.

아들은 공립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들이 어떤 교사에게 고대기를 빼앗겼는데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는 바람에 고대기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학교에서 담배 검사를 한다며 교사가 불시에 몇몇 아이의 가방을 검사했습니다. 아들의 가방에서 담배는 나오지 않았으나 또 고대기가 나왔습니다. 가방 검사를 한 교사가 이번에도 고대기를 압수하면서 방학이 끝나면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결정문] 2012년 4월 24일

고정식 명찰 부착으로 인한 인권침해

(주문)

1. OO광역시 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복에 고정으로 명찰을 부착하게 하여 학교 밖에서까지 성명이 노출되는 관행을 시정할 것과 관할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들에게, 학교 밖에서까지 학생들의 성명이 노출되는 고정식 명찰의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에게 학생들에게 고정식 명찰부착을 강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고정식 명찰 부착을 강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가 학생들의 개인정보 노출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그 시정을 요구한다.

(판단)

1. 각 개인의 성명은 그 자체가 비밀성이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2. 학교 밖에서까지 명찰을 달고 다니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어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5-5 학교폭력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학생을 병원부터 데려가지 않고 쉬쉬하는데 급급했어요.

아들이 기숙형 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아들은 입학 후 다른 학생들에게 세 번이나 맞아서 두 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일어난 즉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했는데 무려 2개월이나 지난 후 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강하게 이의제기를 해서 열린 겁니다. 학교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까 쉬쉬하며 피해학생을 기숙사에 두고 방치하였고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동안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학교측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소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고의적으로 회의 소집을 지연시키고 동시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의료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처음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데다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치위를 열어 가해학생을 벌주겠다고요.

고등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아들이 친구와 놀다가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생활기록부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아이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학생 및 학부모와 모두 합의했지만 학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자치위를 열어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닌가요?

가해학생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훈계 정도가 너무 심하네요.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연필 깎는 칼로 친구를 다치게 했습니다. 다음 날 다친 아이의 부모가 학교에 와서 교장, 담임, 피해 친구와 그 엄마가 있는 자리에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 엄마는 아들에게 “칼로 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 엄마를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험한 말을 하고 아들의 팔을 손톱으로 세계 누르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아들이 겁에 질린 상태였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이에게 “다행인 줄 알아라, 100번 더 할퀴어도 너는 뭐라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정문] 2012년 5월 7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소홀로 인한 인권침해

(주문)

OO고등학교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2급으로 경기도 OO소재의 OO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바, 1학년 때인 2010년도 말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하여 등교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 2011. 2. 피해자가 학교에 다시 등교한 후, 가해 학생들의 추가적인 폭행 및 괴롭힘이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권리구제 및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원한다.

(판단)

2011년도 이후의 2차 피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동일 가해 학생들로부터 추가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학교 측은 도우미 학생들에게 확인하는 정도의 조치밖에는 취하지 않았다.

진정내용의 2차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에는 공익요원의 배치도 없던 상태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2011. 3. 학급 분리조치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바로 옆 반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고, 1주일에 두 번의 체육시간은 합반을 하게 된 바 이는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재등교 이후 가해학생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학교 측의 세심한 배려가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6 집단 따돌림(왕따)

사립 OO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왕따당하는 것이 괴로워 자살하겠다고요.

딸이 차상위계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서 OO중학교에 입학하였고 지금은 3학년입니다. 현재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딸이 전화를 해서 “수업 중 뛰쳐나왔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죽어 버릴거야”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3년 내내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왔습니다. 친구들이 “깟 자격도 없는 게 들어왔다, 네가 신고해도 우리 부모님은 다 높은 사람들이라 무혐의로 처리해 줄 것이다, 신고해봤자 너만 다친다.”라는 말 등을 일상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이러한 왕따 사실을 알면서도 가해학생들 부모의 뒷배경을 보고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왕따’란 집단 내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다수가 특정인을 소외시키고 따돌림과 괴롭힘 등의 피해를 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학교 폭력과 자살, 왕따 등으로 얼룩진 학교 문제는 아이들의 잘못만이 아닌 어른들과 사회에도 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학교측이 피해학생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인권위 진정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과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조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왔는데 학교 측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어요.

조카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친구들로부터 인신공격과 왕따를 심하게 당해 충격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느라 그간 부모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진 것은 학교측에서 초기에 왕따사건을 확실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질 없는 교사로 인해 딸아이의 왕따 피해가 더 커졌어요.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신경정신과 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딸이 왕따를 당했었는데 당시 담임 교사가 상황을 알면서도 가해자들과 같이 청소를 시키는 등 아이를 보살펴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통을 구분하여 일하지 않았다면서 다그쳐 혼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자질 없는 교사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5-7 휴대폰 사용 · 소지 금지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아들이 사립중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서 휴대폰을 소지조차 못하게 합니다. 얼마 전 아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본인에게 전화를 하다가 교사에게 걸려 휴대폰을 압수 당했는데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한부모 가정으로 늦게 퇴근할 때 휴대폰이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유일한 소통도구입니다. 수업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 등에서의 사용 금지를 교칙으로 정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소지조차 금지하는 것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쳐 교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 목적상 수업시간 등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의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 등에도 휴대폰 사용을 과도하게 금지하거나 휴대폰 소지 자체를 막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취지로서 인권위가 시정조치 등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유사사례]

학교 측에서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해요.

OO교육청 소속 교사입니다. 본인은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학교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학생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였다가 분실하여 학부모로부터 손해배상을 하라는 요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이런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을 민원게시판에 올린 바 있는데 이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정문] 2010년 10월 29일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주문)

OO고등학교장에게,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에 더하여 자율학습 미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OO시 교육감의 인가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자로서 현재 OO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인 OO고등학교장은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두어 피해자를 포함한 재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후 매일 16:00부터 18:2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업시간 외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재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판단)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교실 주변 및 기숙사에 총 6대의 수신자 요금부담 공중전화를 설치해 두었다고 하지만 피진정 기관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수가 361명임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6대의 공중전화로 수시로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중전화가 설치된 장소 또한 매우 개방된 곳이어서 학생들이 부모 또는 친구들과 사적인 내용의 통화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휴대전화는 학생이 학교에 알리기 곤란하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내용의 통화를 위해, 또는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의 통화수단으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과도함이 있다 할 것이다.

5-8 용모 규제

학교에서 두발규정 단속을 엄격하게 해요.

OO여고 3학년 이과반 소속 학생입니다. 학교는 70년 전통을 자랑하면서 용모단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장이 바뀌고 나서 학교의 전통적 이미지를 매우 강조하고, 그동안 약간의 자율적이었던 부분들까지도 모두 규율과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두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어깨선 아래로 머리카락이 내려오면 제재를 받습니다.

학생두발자유권도 학생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인권위는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두발의 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학생두발자유권을 학생의 기본적 권리로 보고 △강제이발 금지,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측의 과도한 두발 단속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조사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공립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을 강제해요.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두발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삭 아니면 스포츠 머리만 허용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교사들에게 맞기도 합니다.

사립대학 교수가 제복을 입으라고 하고 머리도 짧게 깎으라고 강요해요.

사립대학교 1학년입니다. 군사 분야 학과 교수 한 분이 학생들에게 “머리를 짧게 깎아라, 머리를 깎지 않으려면 수업에서 나가라.” 등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복도 매일 일상적으로 입으라고 합니다. 군사 분야 학과라서 제복이 필요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수업과 무관한 날도 매일 제복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치마 길이 규제 인권침해인가요?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맡고 있는 선생입니다. 학생들의 치마 길이가 너무 짧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치마 길이를 규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보도자료] 2010년 2월 4일

학생두발 단속과정에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이익으로 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인천 지역 A중학교 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지만, 학교는 학생의 장애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가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방법에 있어 대체수단(그린마일리지 제도: 체벌 위주 학생선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을 어길 경우 체벌 대신 벌점을 주고,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음 등)을 이용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이발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한다고 해도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5-9 자율학습 강요

고등학교에서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해요.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 대부분은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자율적인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제입니다. 학부모의 학습 동의 도장을 받아오게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순전히 형식적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밤 10~11시까지 잡아두고 있어 부모조차 자녀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자율학습 강요는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과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학교가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중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측이 학생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강제로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시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받아 보십시오.

[유사사례]

공립고등학교에서 학생 의사도 묻지 않고 강제로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겠다고요.

공립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희망여부도 묻지 않고 시간표상으로 무조건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만일 야간자율학습에 불참하고 도망가는 학생이 있으면 맞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5-10 임신 · 출산과 학습권

임신한 딸이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데 학교 측에서 전학을 강요하고 추천서도 안써줍니다.

딸이 서울 OO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현재 임신 8개월입니다. OO고등학교에서는 딸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임신기간 동안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소개시켜 주지도 않고 부모와 학생이 스스로 알아보고 다른 학교로 전학가라는 식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교 전학에 필요한 추천서조차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딸은 OO고등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습권을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헌법」 제11조에서 평등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에서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퇴학·전학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진정시 인권위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학습권 배제 등의 차별 여부에 대해 조사·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여자 친구를 임신시킨 아들, 지금의 학교에 다닐 순 없나요?

아들이 OO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 친구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내년 초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번 주까지 아들과 아들의 여자 친구 모두 전학을 가라고 합니다. 전학을 가지 않으면 출교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계속 지금의 학교에 다니고 싶어합니다.

[보도자료] 2010년 12월 28일

청소년 미혼모 퇴학·전학규정 삭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권고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고,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해 청소년 미혼모가 입소 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학생 대상 임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 대상 연수 등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를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의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미혼모 보호시설 등에서의 정규교육을 통해 학업 단절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기존 순결교육 중심의 성교육에서 임신과 피임, 예비부모실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청소년 임신 및 재임신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1-12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_06 정보인권

- 6-1 개인정보 수집
- 6-2 개인정보 열람
- 6-3 개인정보 유출
- 6-4 생체정보 수집
- 6-5 CCTV
- 6-6 GPS

6-1 개인정보 수집

전자학생증을 핑계로 사립중학교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은행에 유출했어요.

딸이 사립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학교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니 전자학생증 발급을 위해 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자학생증을 통해 학생증, 도서관출입증, 전자통장, 선불교통카드, 공인인증서 보관, 등하교 자동 알림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이 동의서는 개인 금융거래 용이었고 OO은행 귀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학교가 전자학생증 제작에 은행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3학년은 전자학생증 발급에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학교의 무책임한 행위로 학생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유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자학생증에 금융기능이 필요한 지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도 없이 또한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사기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사사례]

경찰청에서 정신병원 환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넘겨달라고 합니다.

보건소 직원입니다. 얼마 전 경찰청에서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6개월 이상 입원시킬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 환자별로 계속입원 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청에서 그 대상자들의 성명, 주민번호, 병명, 장애등급 등의 정보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병원이 퇴원여부 심사를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경찰청이 다른 목적으로 수집하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보도자료] 2011년 10월 28일

인권위,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관련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카카오가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분리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에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개인 휴대전화 주소록에 들어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선(先)동의 후(後)거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 정보의 수집 역시 △추가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목적이 강하다는 점, △이메일 정보의 수집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서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정삭제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강제했다는 점,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추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명확한 고지를 통한 이용자의 동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고지와 설명 없이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6-2 개인정보 열람

검찰이 자의로 금융정보를 열람해 놓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얼마 전 OO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은행은 검찰의 요청에 의해 제 아내의 금융거래 정보와 인적사항을 검찰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검찰청에 전화하여 무슨 이유로 금융정보를 열람했느냐고 물었지만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청이 개인 정보를 열람해 놓고 사유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정보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검찰이 영장도 없이 또한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의 금융정보를 열람하고 정보열람의 사유조차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에 의해 발부된 영장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인의 금융정보를 열람한 것이라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파악한 후 피해사실을 구체화하여 진정한다면 인권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조사·판단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유사사례]

사립중학교 교감이 죄책감도 없이 교사들의 편지를 뜯어봐요.

사립중학교 교사입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 교감이 본인에게 온 우편물을 제 허락도 없이 뜯어봤습니다. 우편물에 중요한 개인정보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동료 교사들이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항의했더니 교감은 “교감은 교사의 우편물을 뜯어봐도 된다. 우편물을 남이 못 보게 하려면 주소를 집으로 해놔야지 왜 학교로 기재해 놨느냐? 뭐 숨기는 거 있냐?”라고 말했습니다. 교감은 신고할테면 하리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문] 2011년 11월 23일

인터넷 게시물 무단조회로 인한 사생활 침해

(주문)

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경찰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2010. 4. 2. 지시명령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통지를 받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후 2010. 4. 5.부터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관계부처에 해임에 대한 질의나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은 OO경찰서 소청 대리인으로 진정인이 위 사이트에 문의한 내용을 임의로 출력한 후 이를 2011. 6. 21. 아무 근거없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는 바, 이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판단)

본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소속 기관 감사부서의 청문감사관으로서, 소청심사 시 징계요구권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청을 수행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표명하거나 답변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감사규정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 바, 피진정인이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처리지정을 위하여 부여된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진정인이 타기관에 제기한 민원내용을 임의로 출력·보유하고, 이를 소청심사위원회에 무단으로 제출한 행위는, 진정인이 자신의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여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舊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3 개인정보 유출

투표소에서 전과로 인해 선거권이 제한된 주민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했어요.

본인은 집행유예 중이며 9월이 만료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4.11 총선에서 선거권을 제한받아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4.11 총선 투표를 하고 집에 와서는 “아빠는 왜 투표권이 없는 사람 명단에 올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투표소 앞에 ‘투표권이 없는 자’ 라고 하여 주민 다섯 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명단이 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본인의 이름도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투표소 앞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 놓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 여부를 판단받아 보십시오.

전과 등에 의해 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길 원치 않을 수 있으며 전과 사실 등은 개인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소에서 선거권이 제한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명예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보십시오.

[유사사례]

검찰이 참고인 인적사항을 공개해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동생이 경찰서에서 절도사건 관련 참고인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름, 주민번호, 직업, 거주지 등 인적사항이 모두 담긴 참고인 진술서를 검찰에서 열람·복사해 가서 면장, 농어민후계자, 주민들에게 돌려서 보게 하고 동생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어느 누가 참고인 증언을 하겠습니까? 불안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결정문] 2012년 1월 20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12년 1월) 중 “정보인권” 제2기 인권 NAP 권고 내용

(목표)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핵심인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제공·유통과 차별없는 접근을 보장·촉진함으로써 정보인권 보장의 기틀을 마련함.

(핵심 추진과제)

1.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등의 개선
 -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
 - 행정정보공유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
 - 개인정보 보호법 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규정 개선
 - 전자발찌 제도나 DNA 신원확인정보 수집제도에 대한 개선안 마련
2.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자율규제로의 전환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제의 민간자율정책 권한 이양
 - 정보통신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개선
3. 정보접근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 디지털 문맹자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의 실질적 보장
 -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비밀 정보 외 공개 의무화
 - 취약계층 등의 방송 통신망 접근권 실현을 위한 중·단기 계획 수립·시행

6-4 생체정보 수집

인감증명서 발급시 꼭 지문채취를 해야 하나요?

오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OO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분확인 절차로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주민센터 직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말도 없이 무턱대고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라는 말부터 했습니다. 본인이 범죄자도 아닌데 왜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직원이 “인감증명서 도용 범죄가 많아 범죄예방 차원에서 거의 모든 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본인은 끝내 지문인식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신분증과 도장 확인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지만 기분은 매우 나빴습니다.

국가는 생체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여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것으로써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때,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분증과 도장 등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문인식기를 통해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인권위에 진정접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교사들의 출퇴근 관리를 지문인식으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사립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교사들의 출퇴근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이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석상에서 교장이 교감과 행정실장에게 오늘 중으로 지문인식을 하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강제로라도 지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DNA를 채취하겠대요.

강제추행과 폭행이라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죄사건과 관련하여서도 DNA를 채취해야 한다는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분명히 무죄였고 당사자가 DNA 채취에 동의한 바도 없는데 이럴 수 있나요?

[보도자료] 2011년 10월 30일

세종시 스마트스쿨, 학생출석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종시가 'u-스쿨 구축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스쿨 지문인식시스템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문정보 수집을 통해 얻는 출결체크라는 공익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도에 비해 크지 않고, 이러한 지문정보 수집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과,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5 CCTV

[보도자료] 2011년 7월 26일

인권위, DNA 신원확인법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1헌마28 헌법소원 사건 등)

「디엔에이신원확인법」 관련 규정은 대상범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점, 특정 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형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피의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피의자로부터 DNA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구속피의자를 부당하게 범죄자 취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국가가 당사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감시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어요.

방위산업체 직원입니다. 폭발물을 다루는 업체인데 군에서 감독관이 파견 나와 그 공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하여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취가며 누구는 1분에 몇 개 하는데 누구는 몇 개 밖에 못한다며 비교하고 근무태도를 감시합니다. 실제로는 노동감시를 하면서 취급 물품이 탄약이라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CCTV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구에 센서작동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하더라도 최소침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업무수행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CCTV 설치라고 하여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를 임의조작하거나 녹취하는 것은 금지되며 개인정보 분실·도난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CCTV가 다른 목적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인권위에 진정시 작업장 근로 감시 부분에 대한 군의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정신병원 병실을 포함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알콜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층에 남자 병실과 여자 병실이 하나씩 있는데 병실마다 CCTV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CCTV는 고정식으로 각 침대를 비추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자기 병실과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이렇게 사적인 공간인 침실을 하루 종일 CCTV로 촬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6-6 GPS

[결정문] 2012년 2월 23일

교실내 CCTV 설치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

(주문)

OO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CCTV 설치행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의견표명 배경)

OO시교육청은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인권침해인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질의를 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실내 CCTV가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판단)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으며, 설사 교실 내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CCTV의 설치로 인하여 범죄 전이효과가 발생하여 교실이 아닌 곳에서의 범죄 발생 가능성도 있는 등 그 효과도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교실 내 범죄예방을 위해서 복도 측 창문의 시선 확보, 교사의 범죄예방 모니터링의 증대,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생과 교사의 자연 감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행동과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기본권 제약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불가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실 내 CCTV 설치 행위는 학교 폭력의 예방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설치된 CCTV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촬영되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교육의 자주성 확보 등 기본권 제한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관공서 관리자가 GPS를 통해 분단위로 업무를 감시하여 숨이 막혀요.

관공서에서 차량운전 일을 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는 적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관리자가 GPS를 달아놓고 매일 출근 시간, 출발시간, 도착시간 등 하루 일과를 분단위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초 별로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었냐, 거기서 뭐했냐”라고 물으며 일일이 따지고 똑같은 경위서를 네 번이나 쓰게 한 적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혹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GPS 위치추적으로써 과도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근무자의 위치와 행동을 추적하고 감시하다시피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

업무용 GPS를 근로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관공서에서 화물차를 단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차량에 GPS가 달려 있는데 업무용으로 쓰다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 감시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우 괴롭습니다. 관리자는 자신의 휴대폰에도 조회 프로그램을 깔아 놓았다며 집에서 실시간으로 GPS를 통해 직원들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안심택시 제도란 것을 만들어 모든 택시기사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안심택시' 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에 스마트폰 바코드를 부착하여 승객이 바코드를 찍으면 택시가 이동하는 위치와 택시 기사에 대한 신상 정보가 나타나는 장치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모든 차량에 바코드를 설치해 놓는 것은 모든 택시기사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택시의 이동경로가 고스란히 노출되는데 이는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11-12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_ 07 장애인 차별

- 7-1 고용상의 차별
- 7-2 상업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 7-3 교육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 7-4 정당한 편의 미제공
- 7-5 이동권
- 7-6 장애인 학대(임금착취 포함)
- 7-7 정보통신 접근권
- 7-8 기타

7-1 고용상의 차별

시각장애인은 무조건 채용할 수 없대요.

시각장애 5급입니다. 대형마트 아르바이트 사원을 채용하는 홍보 팜플렛에 '장애 사원 우대' 라고 써 있었고 본인은 매장관리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사장이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직원 말에 따르면 사장은 장애인을 채용하면 이용자들이 꺼려해서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경증 장애일 뿐 아니라 과거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도 문제없이 잘 해낸 적이 있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채용에서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채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고 과거에 다른 직장에서도 문제없이 업무를 잘 수행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채용에서 배제했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차별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사사례]

OO시 공원 기간제 근로자 모집에서 체력 검증에 대한 장애인 기준을 바꿔주세요.

뇌병변 장애 3급입니다. OO시가 운영하는 각 공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업무 자체가 현장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체력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사람에 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체력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별, 남녀별 기준은 다르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 장애인은 아예 합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25년 목수 경력자인데도 청각장애가 있다고 건설사에서 채용을 거부해요.

청각장애 2급입니다. 어제 OO건설사의 건축업무 중 목수 일에 지원했다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본인은 목수 기술도 있고 25년 목수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OO건설측은 안전교육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 채용을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결정문] 2010년 9월 10일

군청의 부당인사에 의한 장애인 차별

(주문)

OO군수, OO지사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담당자에 대한 경고조치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피해자 가족을 위한 법률구조 요청을 하기로 한다.

(진정요지)

공무원으로 근무 중 신장장애 판정을 받고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했다. 해당과 책임자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퇴직을 종용했고 장애를 이유로 업무 부적격자로 선정,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가족 등이 수차에 걸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대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판단)

피진정인이 고용에 있어서 장애를 고려한 배치 및 전보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 및 제11조2항을 위반행위로 판단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당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2 상업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장애인이라고 놀이기구에 타지 못하게 해요.

청각장애인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를 마치고 외국인 친구들 20여명과 동대문에 놀러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OO랜드에서 운영하는 '디스코광광'을 즐겁게 타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도 이용하려고 했지만 시설관리자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도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관리자가 놀이시설 탑승을 거부했다면 위원회에 진정해서서 차별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사사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호프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 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오는데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안내견은 1층에 묶어두고 들어가게 하면 안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보험금 지급이 안되나요?

약 20년 전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당시 보험사는 어떤 경우에도 입원하면 하루에 3만원의 입원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최근 정신과적인 문제로 두 달간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퇴원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니 정신과는 입원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통계나 근거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도자료] 2011년 9월 26일

공공건물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OO시청사 민원실동의 승강기 미설치는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OO시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OO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OO시청 민원실동이 1988년에 신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청사라는 점, 지하 구내식당을 비장애인과 같이 장애인인 이용자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피진정 기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민원실동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이 시설 및 설비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7-3 교육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지적장애 아동은 유치원에 다니지 말래요.

지적장애 3급인 딸(5세)이 있습니다. 집이 이사를 가게 되어 비장애인 아이들이 다니는 OO유치원에 입학하여 2~3주 정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장이 아이를 계속 돌볼 수 없겠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이 CCTV를 확인하고 제 딸을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두기 싫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유치원 차량이 오지 않아 현재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잘 지내도록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 유치원은 다른 부모들 말만 듣고 바로 유치원에 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 등원을 거부한다면 인권위에서 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사사례]

장애학생은 소풍도 따로 가래요.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며 지적장애 3급입니다. 현재 도움반(장애인반)이 아니라 일반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풍을 갈 때도 초등학교 때는 비장애인 학생들과 잘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 와서는 소풍가기 전에 학교 측에서 장애학생은 비장애인이 가는 소풍에 가지 말고 장애학생들끼리 따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들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비장애인 소풍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 소풍에서 개별 활동 시간에 장애인인 아들을 혼자 방치하여 아들은 길을 잃었고 사람들이 한 시간이나 아들을 찾아 다녀야 했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좋아진다는데, 교사가 자폐아라고 전학가래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답답은 아들이 불안이 심하다며 입학 3일 만에 자폐인 것 같다고 하면서 항상 보조교사가 붙을 수 있는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아동발달센터 상담 결과 아들은 장애가 아니고 부모와 교사가 관심만 가져주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1주일간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답답이 냉대하고 전학을 가라고 하니 속상합니다.

[보도자료] 2012년 3월 28일

학급 내 상호 폭행에 대한 후속처리 시 장애학생만 수업배제는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급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각장애인 학생만 수업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소속 교직원에게, 관내 학교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대상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가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관련자에게 수업참여 제한 또는 배제 조치는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과 학교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담당 교사는 폭력 사건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학생에게만 수업 배제 조치를 한 것은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7-4 정당한 편의 미제공

몸이 불편한 장애인인데 꼭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서류를 받으려고요.

뇌병변장애 1급입니다. 도시가스 및 수도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는 활동보조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혼자 동사무소에 가기가 불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관리사무소로 팩스로 보내달라고 동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증명서들을 관리사무소로 발송해 주었는데 유독 이 공무원은 저의 요청을 거부하고 반드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차별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차별이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호는 형식적으로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지만 사실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일명 간접차별)도 동법상의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병변장애 1급인 장애인에게 서류를 받기 위해 반드시 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하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것은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판단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유사사례]

특수학교에서 전공과에 다닐 땐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대요.

저희 아이는 자폐아로 공립 특수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전공과에 합격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 입시 요강에 자가 통학자로 제한하여 모집했는데 이 학교는 그런 요건이 없었고 통학버스로 다니던 곳이라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합격 후 자가 통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축한 학교건물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아들은 뇌병변장애 1급이며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학교에서 작년에 별관을 지은 후 체육수업을 별관 2층에서 하고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만 있고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는 없어 교장의 지시로 아이를 안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부모 세 명이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미제공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때 이미 예산을 다 썼다고 올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7-5 이동권

[보도자료] 2011년 8월 18일

지하철역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도권 지하철 내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코레일 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설치하고 관할 모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실태 점검을 통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과 △국토해양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공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비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로 구분 설치했음에도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점 △장애 유무를 떠나 남자와 여자는 사회통념상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남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자료] 2011년 8월 2일

우편취급국, 시각장애인 위한 확대경 비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편취급국에 비치된 우편안내책자 등은 피진정인 등이 생산해 배포하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진정대상 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을 비치할 것,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습니다.

딸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고 지적장애 1급입니다. 게다가 몸도 불편해 보행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학교 계단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다 계단 폭이 일정하지 않아 아이가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매일 아이를 교실까지 바래다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건물이 두 개 있는데 한 건물에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 건물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학교측에 이야기했는데 학교측은 교실을 만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는 1학년, 5학년, 6학년 교실이 있는데 그 학년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학교는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교육 책임자는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 기관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이 공부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동권에 제한을 받는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로 장애학생의 학급을 옮기는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③교육 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 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7-6 장애인 학대(임금착취 포함)

[유사사례]

시각장애인용 신호등 음성유도기가 고장난 지 2년이 넘었어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신호등 음성유도기가 고장 나서 2년 전에 다산콜센터에 접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 3주 전에 다시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경찰의 업무영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수차례 전화하여 위치를 물었지만 언제 수리가 될지 모른다고 좀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음성유도기가 없으면 무단횡단을 하는 것과 같이 위험합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요양병원에서 휠체어 경사로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어요.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합니다. 올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입원실로 가던 중 경사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휠체어가 다니는 경사로를 정식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합판으로만 대충 깔아두었기 때문에 경사를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휠체어 환자를 위한 경사로 하나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때리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요.

지인의 집에 갔다가 어떤 장애인 시설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쭉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각목 같은 것으로 때리는 소리가 났고 뒤이어 바로 사람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떨려 지인의 집으로 와 그 상황을 설명하니 지인은 평소에도 가끔 그런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인권위가 실사를 나가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은 누구든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집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누구든지 인권위에 진정하셔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도자료] 2011년 9월 20일

지하철역에 경사로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도권 지하철 서울역 및 충무로역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서울역 1·4호선 환승통로에 경사로를, 충무로역 3·4호선 환승구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관할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서울 특별시장에게, 경사로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서울역의 경우 1·4호선 환승구간에 바닥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휠체어리프트 이외의 이동편의시설이 없는 점 △충무로역 3호선 승강장의 경우 외부 또는 대합실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점 △전문가 자문 결과 서울역에는 경사로, 충무로역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해 서울메트로가 해당 역사에 대해 경사로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용역·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사사례]

개인보호시설에서 장애학생을 굶기고 폭행했어요.

아들(17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자폐증이 있고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 전쯤 어떤 시설에 보냈었는데 입소할 때 80kg이던 체중이 지금은 50kg미만입니다. 입소 초기 1~2개월 사이에 체중이 급감했습니다. 다른 아동들도 모두 마르고 무기력해서 활동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시설에서 OO특수학교에 다니는데 최근 담임교사가 "아들이 눈을 맞은 것 같다. 멍이 시퍼렇게 들었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시설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7명의 아이들 중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그러는데 아들이 말을 안듣는다고 시설 교사가 때리고 밟았다고 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맞을 때의 공포를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7년간 월급도 안주고 구타도 했어요.

처남은 장애 4급이며 11~12세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남이 행방불명 되었었는데 가족들이 나중에 처남의 행방을 알고 용인 소재의 OO주유소에서 데려왔습니다. 처남의 이야기를 들으니 약 7년간 그 주유소에서 일했는데 월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월급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야구방망이로 무척 맞았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2011년 7월 12일

인권위, 장애수당 등 착취한 시설장 검찰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울산 소재 OO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1. 검찰총장에게, 생활장애인 피해자들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OO보호센터장 수사의뢰,
2. 해당 광역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를 포함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피진정 시설을 포함하여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3. OO보호센터장에게, 2008. 4월부터 2011. 3월까지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 총 25,587천원을 피해자 11명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기본적 생활유지 및 복지, 자립을 위해 사용될 것을 전제로 지급된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피진정인이 그 용도와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 불투명하게 임의로 사용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금전착취)'에 해당하고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했고 관리·감독 기관에는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했으며, 피진정인에게는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자료] 2012년 2월 1일

중증장애아동 학대, 부당대우 등 인권침해한 장애인시설장 검찰고발, 시설폐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OO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OO시설장을 고발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과, △광주광역시시장에게 해당 법인과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해당 시설 폐쇄에 따른 거주생활인들의 전원조치와 관련해 인력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피해자 A씨(여, 17세, 지적 및 뇌병변장애 1급)는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서 2011. 6.까지 8년 넘게(해당 시설장 부임 후 3년 가량) 사고예방 및 보호를 이유로 걷기 치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갇혀 지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경까지 직원들이 빗자루 등으로 거주생활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린 사실, 2011. 7월말까지 시설장의 인지 또는 묵인 하에 거주생활인들을 방안에 놔둔 채 방문을 밖에서 잠근 사실, 시설장이 자신이 싫어하는 과일 등 제철음식을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실, 여성재활교사들이 남성생활인들을 목욕을 시키거나 보조를 한 사실, 거주생활인들에게 개인별 구분 없이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 거주생활인 대부분에 용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제7조), 재산권행사의 권리(제30조 제3항), 폭행·학대·감금 등 부당한 대우 금지(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제35조 제4항), 성적 수치심 유발 금지(제32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예방 및 보호를 이유로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 피해자 B를 임의로 격리시킨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 「형법」 제273조의 학대죄와 제276조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7-7 정보통신 접근권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방송을 해주세요.

청각장애인으로 인터넷 TV 시청과 관련하여 OO사의 OO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생방송에는 자막이 있으나 다른 프로그램들에는 자막이 없어서 시청하는 데 불편합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모두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정보통신과 의사소통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TV 사업자가 청각장애인이 프로그램 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수화통역이나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셔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③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장애인은 위성방송과 디지털컨버터를 통한 장애인 해설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이며 OO위성방송 가입자입니다. 장애인은 국가로부터 디지털컨버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음성해설방송, 화면해설방송, 자막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컨버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 가입중인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가입을 해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없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각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가 표시된 버튼식 휴대폰은 다소 편리하지만 터치식 휴대폰은 사용하기 힘듭니다. 즉 시각장애인은 음성지원기능인 TTS가 포함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데 OO폰은 이 기능이 있지만 다른 회사 기기에는 이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OO폰처럼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2012년 2월 20일

청각장애인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해 영상통화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환영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용자 누구에게나 단계별 요금제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청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해주지 않는 점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 하였지만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서비스 제공에서 있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로 판단하여 이동통신 3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요금제 운영에 있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전용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의미있는 조치라고 여겨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이러한 조치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 상의 편의증진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7-8 기타

장애여성이 자꾸 임신한다고 주민들이 불임수술을 시키라고 하네요.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저희가 돌보는 사람 중에 지적장애 2급인 여성이 있는데 의사소통 능력도 있고 판단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올해 이 여성이 다섯 번째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전에 낳은 네 명의 아이들은 시설에서 키우고 있으며 이 중 두 명은 지적장애입니다. 여성은 노숙상태로 지내다가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사회의 주민들은 복지관이 여성을 후원하고 자꾸 돌봐줘서 임신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 이 여성에게 불임수술을 시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대응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강제로 불임수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등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했을 경우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타 사례

장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홍보에 이용해도 되나요?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뇌병변장애 1급입니다. 학교에서 '왕따 및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제목의 UCC를 만들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왕따 학생이 장애인을 돌볼 때 만큼은 왕따를 당하지 않고 친구가 되었다. 장애학생은 침을 흘리고 경기와 발작으로 약을 먹는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만들어져서 아들이 기분 나빴습니다. 나중에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되었지만 외부 공모전에 까지 출품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UCC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입니다.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한국에 살고 싶지 않아요.

48세의 정신분열장애 환자입니다. 어릴 때 학교에 다닐 때 선생에게 머리를 맞아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나눠 준 위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없으며 무시하고 있고, 엄마와 형제 자매들도 저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로만 선진국이지 장애인을 무시하고 깎보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싫어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보도자료] 2012년 2월 8일

장애유형 고려 않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소재 OO아파트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OO아파트측(생활문화지원실장)에는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를 개정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는 관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대한 홍보와 위반차량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O아파트의 내규에 따라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에 관한 고려나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등급 순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면, 상지절단 지체장애 1급 장애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불가)이 하지절단 지체장애 3급 장애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에 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우선 배정되는 불합리성이 있고, 특히 하지관절, 시각장애, 청각장애 4·5급 장애인은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에도 이용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보호차 차량에 대해서도 장애인 탑승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배정하여 사용토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운영은 단순한 교통행정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해소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홍보 및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해당 구청이 부담해야 할 법률적·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자료] 2012년 5월 22일

장애인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산정 시 전문의 진단 등 절차 거쳐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행위에 대해, OO지역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게 △진정인의 기존 장애에 대해 전문의 진단을 받은 후 신체장해를 종합 판단하여 피해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소속직원들에게 장애인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OO지역 교육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신체장해를 종합 평가함에 있어 전문의의 소견이나 진단 없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2급을 「학교안전법 시행령」이 정한 장애 2급으로 해석해 진정인은 평생노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고 보고 일실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1~6등급)과 「학교안전법 시행령」상의 장애등급(1~14급)은 모두 의학적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정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개인에 적용할 때에는 전문의사의 진단과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판정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2급이 「학교안전법 시행령」상 장애 2급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장애2급의 장애인은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편견에서 전문의 진단 없이 임의로 장애등급을 산정한 것은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11-12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_08 성희롱

- 8-1 공공기관
- 8-2 직장
- 8-3 학교
- 8-4 병원
- 8-5 복지시설
- 8-6 기타

8-1 공공기관

검찰계장이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는 피의자 아내에게 성희롱 했어요.

남동생이 마약사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올케(남동생의 아내)와 연락을 하고 있어 검찰에서는 올케에게 피의자와 다정하게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이 올케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둘이 붙어먹는다. 다른 피의자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붙어먹었다”고 성희롱 발언을 했어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검찰직원의 발언, 성희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검찰 관계자가 피의자도 아닌 사건관계인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인권위에서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지켜 사법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폭행, 가혹행위 등 금지)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사사례]

경찰이 제 성기를 보고 비아냥거려요.

지갑이 없어져서 지구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조사를 해주지 않기에 항의하면서 항의의 표시로 옷을 벗었습니다. 경찰은 제 몸에 있는 문신을 보더니 “저 새끼 전과자 아냐” 그러면서 빨리 넘겨 버리라고 했고 또 본인의 성기를 보더니 “남자 새끼가 그것 밖에 안 되냐”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제 앞에서 성기를 보이며 성추행 했어요.

경찰이 본인의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토요일에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갔는데 갑자기 자기 팬티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만져 달라고 하면서 희롱했습니다. 본인이 “당신 도대체 뭐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경찰은 “그냥 심심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 대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8-2 직장

회장의 파렴치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어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전화를 하더니 회장 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회장실에 가니 회장은 침대에 드러누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먹고 살아야 하겠기에 “아버지 다리 주무른다고 생각하고 참자”는 생각으로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팔이 아파서 더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가려는데 회장이 갑자기 손목을 당겨 자신의 속옷에 넣고 비볐습니다. 너무도 혐오스러웠습니다. 이후에 회장은 사무실로 와서 “오늘 너무 고맙고 수고했다”며 2만원이 든 봉투를 하나 주고 갔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돈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직장 상사의 성희롱은 인권위의 조사대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이 다리를 주무르게 하고 내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속옷에 넣고 비빈 행위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

회식 날 부장이 기습적으로 뽀뽀했어요.

회식 날 술집 앞 골목에서 부장이 기습적으로 뽀뽀했습니다. 지난 3년 간 부장은 간간이 기습적으로 붙이나 손등에 뽀뽀를 해왔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없었던 다른 회식 자리에서는 부장이 남성 직원들 앞에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개가 처녀인 것 같나, 처녀가 아닌 것 같나?”고 물어보는 등 음담패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직원을 돌아가며 술자리에 불러 성추행을 했어요.

OO부 산하기관에서 단장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여직원들이 매주 금요일 새벽까지 돌아가며 술자리에 불러 다녔습니다. 본인이 불러갔던 자리에는 단장, 하청업체 사장, 본인, 또 다른 여성 이렇게 네 명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단장이 본인의 허벅지를 만지고 뽀뽀해 달라고 하고 또 벽에 세워놓고 성기를 제 몸에 문지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성희롱을 신고했다고 가해자가 오히려 펄펄 뛰어요.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관리 소장은 5년 전부터 계속 저에게 성희롱을 해 온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장은 “경비 아저씨가 옷을 갈아입을 때 보니 성기가 엄청 크더라”라는 말을 했고 또 본인과 경비 아저씨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끼어들어 “밤 골목에서 걸어오는 남자가 무서웠다고? 성기를 차주지 그랬어?”라는 식의 음담패설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 본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슬쩍 신체적 접촉도 합니다. 본사에 성희롱으로 신고했지만 본사는 말이 없고 소장은 오히려 가만두지 않겠다고 펄펄 뛩니다.

[결정문] 2012년 1월 27일

제조업체 상사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제조업체인 (주)OO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며, 피진정인은 같은 회사 기술영업부 이사이다. 진정인은 2011. 5.부터 2011. 10. 회사를 퇴사하기 전까지 사무실 등에서 피진정인이 “이렇게 비오는 날은 모텔에 가야 하는데... 거래쳐 여직원이 예쁘더라.”라고 얘기하거나, 검정 민소매 옷 위에 니트를 입은 진정인에게 “미스 박, 젓탕이 보여.”라고 하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성적 굴욕감 등 정신적 인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바 피진정인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원한다.

(판단)

그러한 성적 언동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진정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진정인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진정인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의 욕설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8-3 학교

학교 행정실장이 교사를 성추행하고 교장은 무마하려고 해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회식을 했는데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교장과 위원들도 모두 있는 자리였고 행정실장은 가슴과 엉덩이를 접촉하고 제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제 몸을 주물럭거렸습니다. 하도 불쾌해서 다음 날 출근 후 교장과 교감에게 이야기해서 행정실장에게 사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부 고충위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는데 교장은 계속 고충위를 열지 않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열었습니다.

성희롱 여부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학교 행정실장은 교장이나 교감은 아니지만 일반 교사와의 관계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실장이 교사의 몸을 더듬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인권위에서 성희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아직도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다” 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OO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해 보니 팀원 13명 중 여자는 본인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박사과정에 있는 어느 선배가 “여자니까 커피를 타야 한다”,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다”, “수영복은 비키니를 입어라”, “가슴은 무슨 컵이나” 등 성희롱과 성차별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군대처럼 서열이 있어서 밑보일까봐 걱정하다가 교수님께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선배가 10여명이 있던 자리에서 “너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냐, 이 xx년야”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도자료] 2012년 2월 22일

입사면접 시 구직자에 대한 성적 발언은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사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인해 구직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채용 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채용여부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회사 대표나 면접관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희롱은 대부분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직장 등 근로관계에서 성적 편견과 차별의식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채용에 결정권을 가진 회사 대표가 잠정적인 피고용인의 지위를 갖는 면접지원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은, 회사 대표로서 직장 내에서 여성 직원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직접 성적 언동을 한 경우로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8-4 병원

남자 교사가 자꾸만 여학생의 가슴 위를 꼬집으며 혼내요.

딸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어떤 남자 교사의 훈계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말썽을 부려 교무실에 가게 되면 남자 교사가 여학생의 가슴 위를 꼬집으며 혼계한다고 합니다. 또 딸이 배가 아파서 교사의 동의 없이 양호실에 간 적이 있는데 이 남자 교사가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을 혼내면서 자꾸 배를 만졌다고 합니다. 제 딸 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정문] 2012년 3월 21일

대학교수의 학생 성희롱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OO대학교 학생으로, 2011년 2학기에 같은 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피진정인이 담당하는 통상영어 과목을 수강하였다. 2011. 10. 25. 15:00에 통상영어 중간고사 시험이 실시되었는데 진정인이 시험시간에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여 피진정인에게 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하자, 피진정인이 시험을 치게 해주겠다고 하며 진정인을 OO호텔 수영장으로 데리고 가 진정인의 손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성적 언동을 하였다.

(판단)

1. 진정사건 발생 당시 피진정인은 OO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신분이었으며, 진정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비록 학교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직위 및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2. 피진정인이 수영장에서 진정인의 허리를 감싸 안았으며, 손등에 뽀뽀를 하고 손을 잡는 등의 성적 언동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정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에 대해 진정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수영장 내 CCTV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모습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팔을 잡는 모습이 녹화된 점, 호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진정인이 자동차 안에서 시험을 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일부분을 노출할 수밖에 없고 시험장소로는 부적절한 수영장으로 진정인을 데리고 가 시험을 치르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 자체의 부적절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적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수술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요.

폐에서 피를 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래 아래 속옷을 모두 벗고 하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받고 있는데 수술실 유리벽 바깥에서 병원 관계자인 듯한 남자들 여러 명이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도 아닌 남자들이 본인의 벗은 몸을 보고 있어 당황스럽고 또 수치스러웠습니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하는 반면 자신의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술과 관계없는 이성의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과정을 지켜보았다면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받은 것입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셔서 성희롱 여부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환자의 권리와 의무

1. 환자의 권리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8-5 복지시설

[유사사례]

의사가 아내를 성희롱 한 것 같아요.

아내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남자 의사가 청진기를 대봐야 한다면서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보통 청진기를 사용하더라도 브래지어는 입은 상태에서 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벗으라고 한 후에 진단을 했습니다. 아내는 진료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집에 와서 울고불고 했습니다.

동네 의사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해요.

동네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남자 의사가 진찰을 할 때 여성 환자들을 성희롱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피해자이며 아내와 누나 등 제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사는 진찰을 할 때 다리를 벌린 상태로 환자에게 다가와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무릎에 대서 여성 환자들이 큰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자 요양보호사가 남자 샤워실에 불쑥불쑥 들어와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남자 환자입니다. 샤워를 할 때 여자 요양보호사들이 함부로 문을 열곤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낍니다. “세탁기를 돌리려고 들어왔다”,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 등의 이유를 대지만 샤워실 문에 샤워중이라는 표시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안내」에서 ‘시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있는 여성 요양보호사가 남성 환자가 샤워 중인 샤워실에 출입하는 것이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인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희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고자 하시면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

노인요양보호사가 동성이 아닌 노인을 돌볼 경우 성희롱인가요?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할아버지 생활관에서 하루 종일 일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성희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8-6 기타

상사의 언어적 성희롱도 수치스럽지만 진정 후 불이익도 걱정돼요.

작년 9월에 직장에 들어왔습니다. 입사 이후 남자 반장은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 “여자가 혼자 살아서 냄새가 나는 거냐?”, “팬티를 안 갈 아입는 것 아니냐?”, “평소 피임은 하느냐?”, “산부인과에서 의사에게 그 곳을 보여줬느냐?”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매우 수치스럽고 불쾌합니다만 인권위에 진정했다가 혹시라도 일이 번거로워지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인권위 진정접수를 이유로 처우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직장 상사의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인권위에 진정접수 하셔서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는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만일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에 대하여도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유사사례]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고 이전 직장에서 왕따까지 하네요.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 및 성희롱을 당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가해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로 경찰에 고소하여 가해자는 검찰로부터 50만원의 벌금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로 인해 직장 동료들이 저를 왕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상사를 벌 받게 했다면서 수군거리고 비인간적인 사람 취급을 하고 있어 너무 속상합니다.

[결정문] 2012년 1월 27일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 사건에 관한 의견 표명

(주문)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은 0075호 등 뉴질랜드 해역 내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제기된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임금문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공정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호 및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주식회사 00대표이사는 소속 선박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 성희롱 및 임금차별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승선 전 교육 및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의견표명 배경)

동 진정사건은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 선박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것으로 뉴질랜드 정부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경영대학의 조사보고서가 발간되는 등 현지에서 주요 인권 문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판단)

위원회는 동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이 지리적, 공간적 특성, 언어 및 통신수단의 제한, 복잡한 선원 공급 및 임금지급 절차 등으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저임금 및 임금체불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가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공해상 또는 외국에서 제3국 근로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 및 구제가 어렵고 국가 간 갈등 또는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기관 및 사업주는 제3국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1-12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_09 나이 차별

9-1 모집, 채용

9-2 퇴직, 해고

9-3 교육, 훈련

9-4 재화 · 용역의 공급 또는 이용

9-5 기타

9-1 모집, 채용

서류와 기능시험도 통과했는데 5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채용이 거부되었어요.

OO학원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이력서를 냈고 한 달 뒤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학원에서 한 번 나와 보라고 해서 사무실로 갔습니다. 셔틀버스로 정해진 코스를 돌아보는 시운전을 한 후 부장이 이사에게 새로 온 직원이라며 인사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부장이 전화를 해서 학원장이 “그는(본인) 나이가 좀 되었으니 보류해 둥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이제 와서 55세 이하만 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류와 시운전도 통과했는데 55세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 제한은 부당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를 선발할 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을 채용에서 배제하지 말고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직은 직무의 성격상 55세라는 연령 기준을 설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인권위에 진정접수 하셔서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모집, 채용

[유사사례]

40대는 백화점 접수대 직원 채용 응시조차 못한다고 하네요.

백화점 문화아카데미에서 접수대 근무자 모집공고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받은 사람이 본인의 나이를 묻길래 40살이라고 하자 20대만 응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본인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 단지 나이만으로 응시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데 법원 감정인 모집 시 65세 이하로 제한해요.

작년에 OO지방법원에서 감정인 모집을 하는데 공문에 나이를 65세로 제한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니까 이를 받아들여 본인은 감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정인 모집에 또다시 65세 제한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권고해서 이미 시정된 것으로 아는데 왜 법원은 아직 그러느냐고 항의했더니 법원 내부규정이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과 교수로 명예퇴직하고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로 일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나이제한 규정을 두면 일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고령자를 골탕 먹이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고령자 취업란!

고용노동부 워크넷 고령자 취업란을 하루에도 4~5번이나 들어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워크넷 초기화면에 연령 제한을 두는 구인광고는 모두 삭제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측에 연락해 보면 100%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사람은 고용센터나 각 구청의 취업담당자인데 최소한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담당자가 업체에 연락을 해서 연령제한이 정말로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니 고령 노동자들이 골탕 먹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2011년 7월 5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연령 일률적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시 지원자격을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광주광역시시장에게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 해설사를 선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설사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건강보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나이와 같은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건강진단서 제출이나 체력검진 등의 자료를 통해 개인별로 확인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시장이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활동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광주광역시시장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 해설사를 선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9-2 퇴직, 해고

비정규직 우편집배원인데 나이를 이유로 해고됐어요.

남편(70세)이 40여 가구가 사는 전라남도의 OO도라는 섬에서 17년 정도 특수집배원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집배원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장을 하고 있던 남편이 책임감에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일 전 OO우체국에서 나이가 너무 많으니 갑자기 사직을 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집배원 일을 하는데 건강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나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2012년 6월 현재 특수 집배원 채용 공문에는 18세 이상이라고만 나와 있고 연령 상한은 없습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사직 통보를 받았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퇴직과 해고에 있어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수 집배원 채용 공문에 연령 상한도 없는 상황에서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5. 퇴직, 해고

[유사사례]

신용카드 콜센터에서 나이가 많다고 계약직 전환을 거부했어요.

42세이고 신용카드 콜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파견직으로 있다가 도급으로 바뀌었고, 2011년 11월 직영화 되면서 2년 계약직 전환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5세 이상은 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고 하여 해직되었습니다. 6~7명의 전환대상자 중 35세 이상인 두 명만 해직된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11년 일한 학교 경비직에서 해고됐어요.

75세이고 11년 동안 학교에서 경비로 일해왔습니다. 원래 재계약 하기 한 두 달 전에 학교 측에서 계약만료와 재계약 일정을 알려줘야 하는데 아무 말 없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OO노동지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서울지청까지 사건이 올라갔는데 서울지청 직원은 본인 이 나이가 많아 학교 측에서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도자료] 2011년 9월 15일

복지시설 교육직에 대한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육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해 6년이나 낮게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OO복지회 회장에게 보육직 정년 상향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령일수록 건강이 약화되고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나,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큰 것으로, 생활인을 돌봄에 있어서 육체적 돌봄이 특별히 많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으나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육체적 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업무숙련도와 생활인과의 친밀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보육직의 나이와 생활인의 안전 여부를 직접 연결시켜 도식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설비나 보조기구의 확충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보육직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업무상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9-3 교육, 훈련

사립대학교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박사과정 입학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73세이고 얼마 전 지도교수님의 권유로 철학대학원 박사과정 시험을 봤습니다. 서류 전형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시험을 봤고 성적도 좋았으며 다른 조건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최종적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 책임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나이 때문에 학교에서 떨어뜨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능력이 되고 뜻만 있으면 언제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나이 때문에 박사과정 진학에 실패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 시험 성적이 좋고 다른 조건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없는 나이차별이라고 생각된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보십시오. 다만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합격자 선정에 대한 대학 측의 기타의 재량사항이라면 인권위 관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유사사례]

나이가 많다고 FTA SCHOOL 교육에 참여할 수 없대요.

73년생으로 현재 대학교와 대학원을 동시에 다니고 있습니다. OO연합회에서 “FTA SCHOOL”을 진행하고 있길래 FTA와 관련한 강의로 듣고 탐방도 하고 싶어서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OO연합회에서는 동과정인 20대를 위한 것이라 그 외 연령층의 참여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항의했더니 직원이 나이 제한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대지 못하다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잠시 후에 문자메시지로 “우리는 당신이 부담스럽습니다. 수강신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나이 때문에 장애인학교 본과 입학을 거부당했어요.

32세이며 고등학교 때 사고로 현재 시각장애 3급입니다. 못다한 공부를 계속하고자 시각장애 인학교 본과에 지원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본과 입학에 거부하고 대신 침술, 안마 등을 배우는 재활반에 입학하라고 했습니다.

[보도자료] 2011년 7월 4일

지방직 5급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시 과도한 나이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 51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나이 제한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중견리더과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5급(시도 담당, 시군구 과정) 약 250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26주 과정으로 운영하는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과정 중 하나이며, 만 51세 이하로 신청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교육훈련이 지방비로 운용되므로 훈련비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고, 훈련종료 후 근무가능기간 등을 감안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더라도 교육 대상자 선발 시 나이가 아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견리더과정 선발 시 교육대상 신청자 나이를 만 51세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 받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9-4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이용

연세 드신 분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헬스클럽 이용자 나이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이용에 제한을 두고 싶은데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이용자가 런닝머신을 이용한 후 끄지 않고 가버리는 바람에 한 어르신이 모르고 올라섰다가 다쳐 그 일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업시설 이용에 차별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에서의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은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일률적으로 헬스클럽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차별 피해를 주장하는 이가 진정한다면 인권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절차를 진행하여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유사사례]

나이 먹었다고 정수기 설치도 안된다는데요.

75세입니다. OO홈쇼핑 책자를 보고 정수기 설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회사 직원이 전화를 해와서 70세 이상자에게는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정수기를 설치해 줄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본인은 직장에도 다니고 있으며 재산도 있어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천대받는 기분이 들어 몹시 서럽고 속상합니다.

9-5 기타

「연령차별금지법」만 생기면 뭐합니까?

2011년 4월에 정년퇴직을 하고 현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령차별금지법」이 생긴 이후 구직 사이트에는 공개적으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이 제한 관행이 여전하여 본인과 같은 고령 구직자는 일일이 회사에 전화하여 나이 제한이 있는 지 알아봐야 합니다. 효과도 없는 법을 만들어 고령 취업자를 오히려 번거롭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담자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며 관련부서에서 참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권위의 ‘연령차별 금지 권고’와 그 결과물인 법 제정의 효과로 공무원 모집 시 나이 제한이 철폐되어 40대 이상도 시험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부문까지 확산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내담자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며 인권위 관련 부서에서 참고하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11년 8월 10일

통·이장 위촉시 상한 연령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이장 위촉 시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로 판단하고, 조례에서 상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전국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나이에 따른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이장 위촉 절차에서도 심의위원회 심사, 읍·면·동장 추천 등을 거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이용·보완해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임기제를 두거나 연임 가능 횟수의 제한을 둬으로써 통·이장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보완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다양한 직장경험과 사회경험을 가진 고령층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통·이장 위촉 요건을 특정 나이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1-12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_ 10 이주민 인권

10-1 강제단속

10-2 강제퇴거

10-3 임금체불과 노동력 착취

10-4 결혼이주여성

10-5 난민

10-6 기타

10-1 강제단속

출입국관리소 단속이 너무 지나칩니다.

경기도 OO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휴일 밤 9시경 OO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10명이 갑자기 찾아와 이주노동자들이 쉬고 있는 각 방을 돌며 신분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놀라고 또 화가 나기도 해서 항의를 했더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외국인 등록번호 대라.”라고 말하며 욕박질렀다고 합니다. 휴일 밤, 그것도 사장도 없는 시간에 생활시설에 갑자기 들어와 단속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속시 적법절차 준수 여부 및 폭언·폭행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을 위해서는 강제퇴거 사유 중 불확정개념을 삭제하고 외국인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정책권고한 바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위법하고 과도한 법집행이 있었다면 진정접수시 단속반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막말, 폭언 등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판단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156 판결 등 참조)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 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등이 법 제 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결정문] 2010년 7월 26일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주문)

1.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측 늑골 한 개를 골절시킨 혐의로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한다.
2.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조치 하고,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OO출입국관리사무소 모든 조사과 직원들에게 외부 인권전문가를 초빙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0. 6. 9.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피해자가 단속과정에서 저항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OO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실에서 수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렸다.

[보도자료] 2012년 2월 15일

인권위, 인권친화적 이주민 정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7개 영역 30개 분야에서 90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개 영역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결혼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 강화, △난민,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미등록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입니다.

<미등록이주민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 필요>

2011. 현재 미등록이주민은 약 16만 7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체류기간을 초과해 미등록의 상태가 된 경우로, 이들에 대한 단속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단속이 이주민의 인권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실적 위주의 법 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A는 OO국가 출신으로 관광 사증으로 입국후 공장에서 불법취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 단속된 후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2인 1조로 수감을 찬 상태를 15인승 승합차에 탑승함. 단속반원들은 부근의 3개 도시를 약 9시간 동안 돌며 추가적으로 단속하였으며, 그 동안 A는 수감을 찬 상태로 승합차에 있어야 했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10-2 강제퇴거

비자를 소지한 이주노동자까지 연행하여 강제 퇴거시키려고 합니다.

제조업체의 직원입니다. 5일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하면서 최근 F4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까지 연행해 갔습니다. 당시 그가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회사에서 대신 비자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는데도 무조건 그를 연행해 갔습니다. 그는 현재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보호소측은 그에게 F4 비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F4 비자를 가지고 단순노무직에 취업한 것은 불법이므로 강제퇴거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회사는 도자기 특수 인쇄를 하는 업체로 단순노무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자를 소지한 이주노동자를 강제연행·강제퇴거시키려고 한다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이주노동자를 강제연행하고 강제퇴거를 시키려고 한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사사례]

애가 돌인데 아내가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어요.

아내가 중국 동포입니다. 아내는 10년 전쯤 한국에 밀입국했고, 저하고는 2004년에 만나 사실혼 관계에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간 밀입국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병원에도 못가고 집에서 출산했습니다. 얼마 전 출입국관리소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체류권을 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본인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자녀가 있다는 사실증명이 누락되는 바람에 아내에게 강제출국명령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돌이나 있는 사람을 강제출국 시킨다면 본인의 가정은 파탄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억울하게 강제출국 당하게 생겼어요.

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사장과 관계가 좋지 않아 5개월 만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주노동자가 사장에게 사과를 하러 갔는데 이미 사장이 고용지원센터에 근로자 이탈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사장이 그를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고 경찰에서는 그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보내 이제 곧 그는 강제출국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원래 이주노동자는 퇴사하는 경우 한 달 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 경우 만일 고용주가 이탈신고를 한 상태라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장이 이탈신고를 철회하고 다시 고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보도자료] 2012년 2월 15일

인권위, 인권친화적 이주민 정책 마련 권고

〈고용허가 기간 만료 후 사용자 동의 등 있을 때 재입국절차 간소화〉

현재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을 최초 고용시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최장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단기순환정책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자 중 체류기간 동안 국내법을 준수하고 기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입국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OO국가 출신입니다. 이렇게 오래 한국에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살다 보니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든 브로커 비용을 다 갚고 나니 몇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체류기간도 지나 버려 불법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관광시중 등의 단기체류 자격,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등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랜 동안 머무르게 된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국말도 꽤 잘하고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중)

10-3 임금체불과 노동력 착취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았어요.

본인은 중국동포입니다. 식당에서 처음 6개월까지는 월 50만원을 받고 6개월 이후 부터는 160만원을 받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5일을 일하였습니다. 처음 6개월은 월 50만원만 받았습니. 그런데 6개월 이후 사장이 160만원을 받았다는 수령증을 본인에게 강제로 쓰게 하고는 실제로는 125만원만 주었습니다.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적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주었다면 진정 접수시 인권위가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와 구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으니 만일 실제적인 금전적 배상 등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착취 당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파요.

전남 OO군에 사는 주민입니다. 마을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7~8명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들을 하루에 2시간만 재우고 일을 시키고 하루 종일 노동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한지 6개월 정도된 것 같은데 사장이 그들에게 약간의 돈만 주었지 제대로 월급을 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잘 먹지도 못해서인지 그들은 본인에게 와서는 자주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용주가 밤에 술 먹고 와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때리고 일하라며 괴롭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외국인이라고 월급을 주지 않아요.

이주 노동자입니다. 사장이 다른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밀리지 않고 주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14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법원까지 갔고 이자까지 포함하여 17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라는 판사의 판결이 있었지만 사장은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벌금 몇 푼만을 냈을 뿐입니다.

10-4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주여성에게는 한국 국적을 줄 수 없나요?

지인 중 베트남 여성이 있습니다. 4년 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는데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일 년만에 합의이혼을 하였고 현재는 3년째 미등록이주민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국 국적을 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권위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방임, 학대 등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인 체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 후 한국 체류 2년 외 재산증빙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긴 심사기간과 복잡한 신청과정, 까다로운 심사요건과 자의적인 심사기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다고 들었으며 제도개선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법무부 지침에 의하면 미등록외국인이라고 하여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니, 이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상담을 받아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길 권유합니다. 다만 합의이혼의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증명 요건 완화 등을 주장하여 보십시오. 인권위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12년 2월 15일

인권위, 인권친화적 이주민 정책 마련 권고

〈결혼 이주여성의 인종적 정착 지원 정책 필요〉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주민은 14만 4천 여 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은 증가 추세에 있고, 결혼 이주민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인신매매 논란 방지를 위한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 마련,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이주여성의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O결혼중개업체는 OO시의 허가를 받고 지정 계시에 '월드컵 16강 기념 OO시민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 행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였음, 이에 대하여 현수막 내용이 인종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필리핀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되어 시정 권고.

[보도자료] 2011년 10월 3일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 위해 신원보증제도 폐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이 국내에서 체류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고 있는 신원보증서가 「헌법」제10조 및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 2의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이 체류연장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이미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므로 이 서류만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원보증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 상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제도의 폐지를 통해 결혼이주민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될 수 있는 바, 이 제도의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5 난민

신변위협을 받아 본국에 돌아갈 수 없으니 난민비자를 발급해 주세요.

주한 OO대사관 직원입니다. OO국적의 A씨는 본국인들에게 돈을 받아 한국의 현 옷을 구매해서 본국으로 보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의 현 옷 구매책임 B씨가 대금결제용 3억원을 착복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A씨는 본국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 만일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비자는 약간 연장된 상태이지만 이후에는 한국 체류가 불투명합니다. 난민 인정은 불가능할까요?

난민신청 절차와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법적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법무부에 신변위협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난민비자를 허용해야함을 주장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인권위에도 동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과를 기다려 볼 수 있겠으나 만일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가로부터의 박해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심사가 오래 걸린다는 점, 난민 인정률이 낮고 난민의 경제적 활동이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도 한국인의 난민신청을 받아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권위가 올해 발표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도 난민·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권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UNHCR, 난민인권센터 등을 통해 난민신청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한 한국인에 의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사례]

난민인정을 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무국적자로 남아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파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로 G-1-6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방글라데시 출신의 남편과 결혼하여 OO구청에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난민신청을 했으나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여 현재 법원의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변호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 셋 모두 무국적자가 되어 현재 의료나 교육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난민 지위로는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 생계마저 걱정입니다.

난민신청이 기각돼 딸이 무국적으로 되어 학교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5년 전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했고 금년 4월에 재신청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딸아이가 무국적 상태로 남아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2년 2월 15일

인권위, 인권친화적 이주민 정책 마련 권고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돼야>

2004년 이후 난민인정 신청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법무부의 난민심사를 통한 난민인정자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난민법」이 제정돼 난민심사 절차가 정비되고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기초적 지원방안 등이 마련됐으나,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2011. 12. 말까지 난민인정신청자 수는 3,926명이고,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260명으로 그간의 난민인정률은 6.6% 정도입니다. 2011년의 경우에는 1,011명이 신청하여 42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어 난민인정률이 4% 정도에 불과합니다.

10-6 기타

산재 승인이 났는데도 강제퇴거 대상자라며 치료를 못 받게 해요.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 손가락을 다쳐 핀을 박고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OO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나와 치료 중인 본인을 연행해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핀을 제거하는데 적어도 2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했는데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다음 날 바로 추방하려 하였습니다. 이후 계속 치료받기 위해서 산재 신청을 했고 산재 승인이 났는데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부 치료를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치료를 위한 보호혜제 요청을 하려면 1천만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동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현재 손가락이 이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강제퇴거 집행의 대기자라 하여도 신체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기본권의 제한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등록이주민 뿐만 아니라 미등록이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라면 치료를 마치는 시점까지 한국 체류가 허용됩니다. 또한 국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강제퇴거 집행의 대기자라 하여도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제반 여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기본권의 제한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치료기회를 박탈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조치를 미흡하게 한다고 생각된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타사례]

미등록이주민과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편이 가나인인 한국 여성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한국에 왔고 3년 전 본인과 결혼하여 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미등록이주민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그 동안 본인이 직장을 다니며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임신 초기부터 몸이 좋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최근 남편이 단속에 걸려 벌금 400만원을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낼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써주세요.

현재 총무로 건물 간판을 통해 인권위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다문화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막에 “OO엄마는 필리핀 사람입니다”라는 글이 나오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OO엄마는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므로 더 이상 필리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그 문장은 “OO엄마는 필리핀에서 온 사람입니다” 또는 “OO엄마는 고향이 필리핀입니다”라고 바꿔야 합니다.

[보도자료] 2012년 1월 11일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해 보호거실의 쇠창살 구조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되는 외국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보호외국인에게 시설 생활규칙,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고충처리상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것
2. 보호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의복, 침구, 슬리퍼 등 물품의 위생처리를 강화할 것
3. 보호외국인의 시설 내 활동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호거실 등의 쇠창살 구조를 개선하는 등 시설의 구조와 운영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할 것
4. 보호외국인의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고, 운동 및 여가활동을 위한 기회 확대, 물품 지원,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할 것
5.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면회 기회를 확대하고 집필도구를 충분히 지급할 것
6. 보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 기본적인 의료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고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정기검진을 강화할 것
7. 장기 보호외국인과 가족동반 보호외국인, 특히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것

[보도자료] 2012년 4월 19일

성숙한 다문화사회 위해 함께 노력해야

다문화사회는 전세계적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40만명을 넘어섰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약 700만명에 이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문화사회'라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주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인신공격은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상의 일부 여론이 대다수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배치된다고 믿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태도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다양성 존중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주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1 기타 차별

11-12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11-1 용모, 신체조건

11-2 학력

11-3 병력(病歷)

11-4 전과(前科)

11-5 국적

11-6 성차별

11-7 혼인

11-8 임신, 출산, 육아

11-9 비정규직

11-10 사회적 신분

11-11 가족관계

11-1 용모, 신체조건

너무 못생겼다면 매장에 있지 말고 주방 일을 하라고 했어요.

딸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사회 경험을 쌓고자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한지 이틀 쯤 되던 날 사장이 딸을 부르더니 이력서 사진과 다르게 너무 못생겼다고 매장에 있지 말고 주방으로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딸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본인이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경찰을 불렀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이 사장에게 그런 말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고 이틀 후 사장이 사과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아직까지 사과할 생각을 안합니다.

용모를 이유로 한 부당한 배치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가진 업무수행능력, 자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용모만을 이유로 고용상 부당한 배치를 했다면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용모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사례]

비만 직원들 지명하더니 감량 실패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네요.

모 회사 콜센터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비만인 직원을 공개적으로 지목하여 체중감량 목표치를 적어 내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체중을 재서 목표 감량에 도달하면 5kg에 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실패하면 같은 액수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비만인으로 지목된 것도 수치스러운데 실패할 경우 벌금까지 내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키 가산점을 과도하게 주고 있어요.

얼마 전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입니다.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는데 실력 이외에 키로 인한 가산점이 20점인가 20%인가 했다고 합니다. 실력이 아닌 키로 점수나 등수를 매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키가 큰 사람이 체조를 하면 더 예뻐 보일 수 있겠지만 실력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자료] 2011년 3월 7일

체중 미감량 이유로 사직 강요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OO회사 대표 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진정인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OO회사의 부사장이 2010. 6. 10. 임원 및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과체중으로 산행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직접 거명하며 “한 달간 결과를 본 후 조치 예정이니 상세 계획을 보고바랍니다. 또한 미달성을 대비하여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기 바랍니다. 한달간 결과에 따라 미진시 체재없이 퇴직조치 바랍니다. 약속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의 내용이 있는 점, △이에 대한 관리자의 회신 메일에 “동봉된 계획서대로 실시하여 감량계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량계획일에 목표를 수행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사직원을 써놓고 감량추진토록 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체중감량 지시와 퇴사 등의 압력이 있었으며, 진정인의 퇴사는 체중감량 달성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OO회사가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목표 미달성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원 개인에 대한 전인적 구속에 이른 것으로, 직원의 체중 감량이 OO회사의 업무, 특히 진정인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1-2 학력

일부 성적이 좋은 학과만 공군 ROTC에 지원할 수 있어요.

공군 ROTC에 지원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공군 ROTC는 항공대학교와 OO대학교,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항공대학교는 모든 학과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제가 다니는 OO대학교와 □□대학교는 일부 학과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과를 제한하는 이유를 공군 측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입 커트라인이 높은 일부 학과로 제한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정학과 제한이 차별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학과 학생을 ROTC지원에서 배제한다면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차별여부를 판단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신 학과라는 것이 서열화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학력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을지는 상담단계에서 확답하기 어렵지만 학력을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인권위의 조사영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사례]

검정고시 출신자는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대요.

대학교 교직원입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는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권위가 이런 문제에 대해 차별 시정 권고를 한 적이 있어 대부분의 대학이 시정을 하였으나 아직 몇몇 대학은 여전히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승무원 채용 시 성별과 학력을 차별해요.

해외 항공기 남자 승무원으로 4년간 근무했습니다. 국내 항공사인 OO항공으로 옮기고 싶은데 OO항공은 남자 승무원 신입사원 지원 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예정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직 직원 모집을 공고할 때는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

[결정문] 2010년 7월 29일

OO사관학교 예비 장교후보생 모집 시 전문대학 출신자 배제는 차별

(주문)

피진정인에게,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시 전문대학 재학생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9년도에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정하여 전문대학 학생들의 사관학교 진출을 제한하였다.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판단)

복무형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은 전문대학 재학생에게도 동일할 것이고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좁히는 것보다 넓힘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OO사관학교설치법」 제3조(입학자격) 제3호 및 「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는 OO사관학교 입학자격 및 생도의 학력 요건을 전문대학 졸업 학력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정시모집과 사전선발의 학력요건을 굳이 달리 정하거나 예비 장교후보생 모집 시 특별히 4년제 대학을 우대하거나 전문대학을 배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정함으로써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된다.

11-3 병력(病歷)

조현증 환자는 암보험도 가입 못하나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습니다. 약물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병을 어느 정도 극복해서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뇌 이상이나 심장이상이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신분열증이라고 해서 암 발병률이 높은 것도 아닌데 암보험이나 기타 질병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건강상태나 환경에 따라 병의 경과가 다를 수 있는데도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했다면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판단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사례]

간염보균자라고 채용을 거절당했어요.

동생이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얼마 전 모 제약회사의 품질관리 분야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던 중 채용담당자가 연락을 해서는 그간 간염보균자를 입사시킨 적이 없다며 채용 거부사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다른 제약회사의 동일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이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폐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는 사람은 취업에서 차별 받아요.

20대 때 폐결핵을 앓았다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결핵환자들은 완치가 되더라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의사들이 진단서에 비활동성 폐결핵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TV를 보니 어떤 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폐결핵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도 이러한 병력으로 인해 나중에 차별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 드렸습니다.

[보도자료] 2011년 12월 27일

암수술 후 5년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OO항공 대표이사에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암 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진정인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것, △응시자의 병력(病歷)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환경에 따라 병의 경과가 다르므로 '암 수술 후 5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광암의 재발률이 높으므로 진정인도 암이 재발할 것이라는 추론 또한 무리가 있고, 만일의 경우 재발하더라도 1~2일 정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수준으로 치료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이 시행한 신체검사 결과로는 진정인의 건강상태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만한 전문적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진정인이 문진표에 과거 병력에 대해 솔직히 기재한 것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병력에 의한 차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직원 채용 시 과거 암수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불합격시킨 것은 병력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OO항공 대표이사에게 병력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과 진정인에게 불합격 처분에 따른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자료] 2012년 6월 11일

시력교정시술 받은 자의 항공운항학과 지원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가 항공운항학과 입학 지원 자격 중 시력 기준에서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입학 지원자격 중 시력 기준을 「항공법 시행규칙」 등에 맞추어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법 시행규칙」의 시력요건을 충족하는 한 시력교정 시술을 받았더라도 장래 항공기 조종사로서의 진출이 가능함에도 피진정 대학들이 항공운항학과 입학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진정인들이 가지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비교하여 지나친 제한이고, 항공운항학과 입학자격을 법령 규정 및 항공회사의 채용기준보다 높게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1-4 전과(前科)

오래 전의 전과 때문에 범죄 예방위원을 못하는 건 억울합니다.

가정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동·청소년·여성 분야에 관심이 많아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선도나 상담에 대한 도움을 주고 싶어 검찰의 범죄 예방위원 모집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신원조회 후 20여년 전의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 예방위원 활동이 불가하다고 탈락시켰습니다. 20여년 전 부득이한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그 후 가슴 아파하면서 더 많은 선교를 통해 속죄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그 문제가 발목을 잡으니 억울합니다.

업무의 특이성이 있지만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찰 범죄예방위원이라는 업무의 특이성이 있기는 하지만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위원선발에서 배제했다면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범죄예방위원직 선발을 인권위의 조사 영역인 고용상의 문제로 볼 수 있을지가 좀 모호합니다. 진정 접수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

전과자라고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10년 전 아는 동생의 부탁을 받고 그가 시킨대로 하다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는데 모든 보험회사에서 본인의 전과를 이유로 보험상품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어릴 적 저지른 한 번의 실수였고 그 후 많이 반성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그 문제 때문에 보험상품 하나 가입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음주운전 전과 때문에 택시 운전을 못해요.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연합회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땀는데도 전과를 이유로 자격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 2011년 10월 5일

전과를 이유로 과도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한 OO사단법인 회장선출 규정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OO사단법인이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이하 '회장선출 규정' 이라 함)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중앙회장, 연합회장 등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OO사단법인 회장에게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장 선출 규정 제10조 제5호 내지 제7호를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진정인의 회장선출 규정에서 전과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유사 목적의 타 사단법인들의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OO사단법인의 회장선출 규정은 과도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전과 이력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음에도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한 점, 금고 이상을 받은 전과자는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OO사단법인의 회장직 선출 관련 규정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각급 회장직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11-5 국적

외국인 앞으로는 인터넷 통신 가입자 명의변경을 안해줘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광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다문화가정에 인터넷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신용불량자라서 은행 통장이 없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는 인터넷 통신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인터넷 통신을 누나 이름으로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용료 지원을 받기 위해 아내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OO통신 고객센터에서는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통신사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명의변경을 거부했다면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국적에 의한 재화·용역 공급상의 차별 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사례]

한국인과 달리 외국인에게는 출국한 기간 동안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파키스탄 사람으로 3년 전쯤 직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어 현재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 고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보니 외국인은 출국으로 인해 한국에 부재중인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장애연금이 나오지 않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소급하여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부재를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데 외국인에게만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차별입니다.

외국인은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중국인입니다. 스마트폰 요금제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최근 OO텔레콤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가입 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외국인 번호를 입력하면 계속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경우 가입절차를 거칠 수 없어 동일한 스마트폰 요금을 내더라도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회사에 지원하려는데 외국인 번호를 쓰는 사람은 접수가 안돼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F-5비자(영주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어떤 회사의 모집 공고를 보고 인터넷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주민번호 대신 외국인 번호를 입력하니 계속 에러가 생깁니다. 모집공고에는 외국인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결정문] 2011년 11월 25일

인증을 이유로 한 목욕장 시설 이용 차별

(주문)

1. 피진정인들에게, 향후 인증을 이유로 목욕장 시설 이용을 거부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시장, OO구청장에게, 외국인 및 귀화외국인이 목욕장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출입제한 등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피해자는 OO출신의 귀화 여성으로 2009. 10.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2011년 9월에 OO사우나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외모가 외국인이고 에이즈(AIDS)를 옮길지 모른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에 의해 출입을 금지 당하였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인증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을 배제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판단)

1.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목욕장 시설 운영자로서 고객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고객의 선호가 합리적 이유 없는 인증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에이즈는 혈액, 성적접촉, 모유 등 체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목욕장 시설을 함께 이용한다고 하여 감염되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에이즈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이유가 되고 이로 인하여 공중서비스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가 외국인의 용모이고 이에 따라 에이즈 감염 염려나 내국인 이용자들의 불안 등을 이유로 목욕장 시설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11-6 성차별

여성 직원에게만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해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고 올해 결혼할 예정입니다. 오늘 상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입사할 때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각서를 쓰긴 했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첫 케이스가 아니라 이전부터 많은 여직원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결혼과 동시에 퇴직해 왔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 아닌가요?

성차별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까지 위반한 것 같은데요.

기혼 남성과는 달리 기혼 여성에게만 퇴직을 강요한다면 성별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로 접근가능하고, 기혼 여성에게 혼인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한다면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도 접근이 가능하니 인권위에 접수하여 판단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사 시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둔다는 각서는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규정한 남녀평등이라는 강행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법률 상담은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1년 10월 18일

결혼이주여성 보험 가입 시 국내체류기간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OO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결혼이주여성의 치아보험 가입시 5년의 국내체류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계약인수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 승인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 가입자의 최근 5년 이내의 질병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국내체류 이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체류기간 5년 이상을 보험가입요건으로 하는 것이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OO보험주식회사는 외국에 장기 체류한 후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국내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내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OO보험주식회사가 5년의 국내체류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사례]

민원 안내는 여성만 가능한가요?

OO자치단체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모집 공고를 하면서 대상자를 여성으로 한정했습니다. 업무가 민원 안내 및 의원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런 업무는 여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수당 지급, 여성에겐 차별적이예요.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 수당과 관련하여 미혼의 장남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 수당이 지급되는 데 반해, 여성은 반드시 부모와 같이 살아야만 지급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에서는 “연구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은 사회 통념상의 개념 및 공무원 가족 수당 지급 규정을 참고하여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습니다. 분명한 여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2012년 1월 10일

해사고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입학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여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사고등학교 교장에게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한정하지 말고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사고등학교 시설 개선 소요예산을 지원할 것과 여학생 입학 허용에 따른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기사(海技士)라는 직업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오기는 했으나 해운업체의 여성 채용 기피,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남자 선원이 대다수인 선박에 승선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피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교육 대상을 남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도 해운선사의 여학생 고용 기피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여학생 선발을 배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해사고가 여학생 입학을 제한하는 것에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사고 등이 여학생 입학에 따른 시설 개선, 해운업체의 여학생 취업 기피 등을 문제로 제기하나, 이는 관련기관이 협력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자료] 2011년 8월 24일

경조금 지급기준 남녀구별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OO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부모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경조금 지급 시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상을 당한 경우 조합으로부터 경조금을 지급받을 필요성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급 기준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결혼한 여성이라 하여 부모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가 남성과 다를 이유가 없는데도 기혼여성의 경우 시부모상에 대하여만 경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전제되어 있어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OO지역 농협측은 여성과 남성 조합원 모두 최대 두 번 부모상에 따른 경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총액이 일치하는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서 여성 조합원이 남성 조합원과 달리 친부모상에 경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부인할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1-7 혼인

사립학교 행정직원인데 결혼했다고 직급이 강등됐어요.

얼마 전까지 OO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었습니다. 올해 초 결혼을 한다고 작년 말에 학교에 이야기하니 행정실장은 학교가 한창 바쁜 시기라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야근도 하겠다고 했지만 학교 측은 결혼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결국 올해 초 결혼하자 학교 측은 일반직 8급이었던 본인을 기능직 9급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결혼을 문제 삼고 게다가 직급까지 강등시켰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결혼 자체를 문제 삼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급까지 강등시켰다면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사례]

치료비가 필요한데 미혼은 국민연금 일시불 지급이 안된대요.

오빠는 미혼으로 국민연금을 10년 넘게 불입해 왔습니다. 만 60세가 되어야 연금을 탈 수 있는데 오빠는 폐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치료비를 동생들이 냈지만 이제 감당이 안돼서 오빠가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고자 했는데 미혼이라는 이유로 일시불 수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혼자만 숙소 복귀시간을 10시로 제한해요.

육군 OO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부대는 독신자에게 평일과 주말 저녁 10시 이전에 숙소로 복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혼자는 같은 숙소에 거주해도 복귀시간 규제가 없습니다. 부대 작전과장은 미혼자들의 늦은 귀가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혼 간부가 술 먹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평일은 이해한다 해도 주말까지 미혼자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11-8 임신, 출산, 육아

특별출산휴가 3일 썼다고 성과상여금 점수 3점 깎였어요.

공립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여 특별출산휴가 3일을 썼습니다. 배우자 출산 시 휴가를 쓰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도 실제로는 휴가를 쓰면 학교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휴가, 외출, 조퇴 등을 하면 성과급 점수를 감점하는데 이번같은 경우 특별휴가를 3일 사용했다고 3점을 감점했습니다.

인권위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성과급을 적게 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휴가인데도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침해 및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인권위는 출산휴가 사용으로 교원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유사사례]

임신을 이유로 전출교원대상자에서 제외되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들 간에는 타시도 전출교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원들끼리 2년간 지역을 바꾸는 것인데 장기 휴가나 장기 휴직을 쓰지 않기로 각서를 쓴 교원만 그 대상자가 됩니다. 저도 타지역으로 전출가고 싶어서 각서를 썼고 얼마 전 OO시 교육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OO시로 가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심상 현 교육청에 미리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교육청에서는 본인에게 전출포기각서를 중용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 아닌가요?

육아휴직 한다고 전근을 강요해요.

교육공무원으로 육아휴직 중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3년차이고 휴직 중 둘째 아이가 생겨 휴직 연장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가 “복직 시에는 다른 학교로 발령을 내는데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쓰고 왔습니다. 통상 한 학교에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자라고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11-9 비정규직

동일 노동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아요.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정규직 직원들과 비정규직 직원들이 같은 장소, 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월급을 정규직 직원의 50% 정도 밖에 받지 못합니다. 또 명예퇴직할 때 정규직에게는 명퇴금으로 1년 6개월 치 내지 2년 치 월급에 해당하는 약 7,000만원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똑같이 명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명퇴금을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월급은 반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회사 측에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만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사회적 신분제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 여부를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명예퇴직금이 라는 것이 통상 근속연수나 퇴직까지 남은 기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된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볼 수 있을지는 상담단계에서 확답하기 어려우니 인권위에 진정접수해서 판단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문] 2011년 8월 26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산전후 휴가(産前後休暇)포함으로 인한 차별

(주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휴가일수 항목에 산전후 휴가(수유시간 포함)를 포함하여 감점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2011. 2. 28.까지 OO소재 OO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2010년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다. 피진정인은 2010년 교원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 항목에 휴가일수를 포함하였고 휴가일수에 산전후 휴가일수를 포함함으로써 피해자는 성과상여금 최하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휴가일수 항목에 산전후 휴가일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산전후 휴가 및 수유시간 등을 사용하게 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판단)

산전후 휴가는 출산 당사자인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시기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회적 인정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필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뿐만 아니라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제1항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도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하게 조치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74조에서는 산전과 산후 90일의 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 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산전후 휴가를 휴직일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소속 교원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항목 중 휴가일수 항목에 산전후 휴가(수유시간 포함)를 포함시킨 것은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에서의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유사사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월급과 연가도 적고
복지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직원들과 일을 같이 하지만 월급은 그들의 1/3~1/2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더 많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연가나 병가 등 휴가 부분에서도 차별이 많고 정규직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입사 전 이런 차별적인 내용을 수용할 것을 근로계약서에 적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교사는 방학에도 출근하여
화분에 물 주고 전화 받으라고 합니다.**

1년 계약직으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화분에 물주고 전화도 받으라고 합니다. 일반 교사와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방학 동안에 학교에 나와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니 억울합니다.

[보도자료] 2011년 10월 17일

호봉 책정시 비정규직 경력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임호봉 획정 시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호봉제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및 고용관리 등이 체계적인 공공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정규직의 인사 및 고용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정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진정인의 경우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지만 정규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근했다고 인정되며, 농협의 경우 계약직 직원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복무 및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자료] 2012년 5월 27일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대상 제외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교원을 근무기간의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1년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공무원인 학교회계직원 및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도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 일부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도 맞춤형 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가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 고취에 있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선량한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제공 노력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데 있어 단지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만 보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 교원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외 금품지급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1-10 사회적 신분

신용불량자라서 경비도 못합니다.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통장을 OO은행으로 한다고 하길래 본인은 신용불량자라서 xx은행만 거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일이 지난 후 본인에게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IMF 위기로 사업에 실패한 후 가족을 잃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왔고 68세 된 지금 먹고 살기 위해 경비일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마저 빼앗아 간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경비업무와 신용불량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해고 되셨군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재 제도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데 근로자가 지닌 업무수행 능력이나 자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등재 사실만 가지고 고용을 거부했다면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차별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사례]

고급 아파트에서 배달하는 사람들은 화물칸을 이용하십니다.

송파구에서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위해 OO아파트를 자주 출입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사회 고위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세탁업자, 택배 배달원, 식당 배달원 등 배달하는 사람들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 엘리베이터가 7~8개씩 있어 텅텅 비어 있는데도 배달업자들만 현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청소일 한다고 보험금을 반만 준다고 합니다.

아들은 지적장애 3급이며 현재 햄버거 가게 정직원으로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들 명의로 OO생명 건강보험 청약신청을 했고 승인 통보도 받았습니다. 이 보험은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성인 3대 질병, 수술과 입원 등 의료실비 성격의 보험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은 아들의 직업 때문에 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써빙일은 100% 지급되지만 청소일은 50%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가입은 했으나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문] 2010년 10월 18일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 거부

(주문)

1. 피진정인에게,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기관이 파산면책자에 대하여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5. 8. 파산면책을 받았고 2010. 4. OO은행에 방문하여 2005. 3.부터 불입한 청약저축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했으나, 파산면책자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 이는 파산면책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판단)

금융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출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채무변제능력 및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영업 재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로 제공된 청약저축으로 채권을 보존할 수 있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겪어야 할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청약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신청한 진정인에게 파산면책자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11-11 가족관계

장학재단에서 재혼가정은 성이 달라 다자녀로 인정하지 못한대요.

재혼한 가정으로 남편의 아이 3명과 본인의 아이 2명 등 총 5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아이들은 성을 바꾸지 않고 전남편의 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현재 남편과는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장학재단에 다자녀 장학금 신청을 하면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원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단 직원은 아이들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 볼 수 없으니 장학금을 받고 싶으면 성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 때도 교육비 공제 문제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통해 다자녀 인정을 받았었는데 장학재단은 끝까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현행법상 성씨를 바꿀 수 없는데 성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자녀로 인정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재혼가정의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가족형태가 있다는 점을 폭넓게 이해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족상황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유사사례]

재혼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직장 동료가 얼마 전 재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장 상사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상처를 주는 등 그녀를 계속 못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그녀를 쫓아낼 목적으로 일부러 휴일도 안주고 보너스도 적게 주며 힘든 일만 골라 시키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켰다면 차별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체장애 1급으로 20년 전 이혼한 후 아들 1명, 딸 1명을 키웠습니다. 딸과는 5년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아들은 본인에게 가끔 생활비를 줄 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싶은데 복지부에서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시켰습니다. 연락도 제대로 안하고 지내는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키니 억울합니다.

[결정문] 2011년 6월 27일

이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 퇴사 시 구직급여 미지급은 차별

(주문)

피진정인에게,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 때문에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근무하던 중 배우자와 이혼하여 친정인 타 지역으로 이사했고 통근거리가 멀어 2011. 2. 부득이하게 퇴사했다. 2011. 3. 진정인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거소 이전으로 인한 퇴사를 이유로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방문했는데, 고용센터에서 결혼이 아닌 이혼 때문에 이사하여 퇴사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는 이혼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판단)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역시 가정생활의 중대한 변화이고 거소 이전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근로자의 가정 사정상 변화와 관련하여 결혼으로 인한 동거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고용센터가 이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실업기간 동안의 생계 보조를 위해 적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인 점, 생계 보조 없이 구직활동에 임해야 하는 실업자가 행정심판 청구 등을 감수하는 경우 현실적인 불이익과 불편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관련규정이나 편람을 이유로 구직급여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행정심판 등을 통한 실효적 구제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살필 때, 위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1-12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_ 12 사회적 약자

12-1 감정노동자

12-2 경비원

12-3 노숙인

12-4 노인

12-5 한진중공업

12-6 강정마을

12-7 기타

12-1 감정노동자

콜센터 직원의 고충 아시나요?

OO홈쇼핑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업무를 하다보면 고객들 중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말하거나 “또라이”, “병신” 같은 욕설을 퍼붓는 것은 기본입니다. 매일 이런 말들을 듣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욕설을 참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 매뉴얼과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적절히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내담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인에 의한 침해는 인권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인권위가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가이드>(실천을 위한 사업주 안내서)를 만들어 사업주들에게 감정노동자의 인권보장에 힘쓸 것을 의견표명한 바 있으니 그 내용을 확인하여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의 특이민원인 대응 관련 특별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각 기관과 연계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특이민원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성숙한 의식일 것입니다. 내담자가 겪는 고충은 상담서로 남기어 이러한 피해사례를 인권위에 알리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사례]

콜센터 직원, 쌍소리와 욕설을 들어도 전화를 끊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매일 쌍시웃이 들어가는 욕설을 듣는 것은 기본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여자 성기를 지칭하며 ‘갈같이 찢어버리겠다’, ‘가위로 목을 따버리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규정상 고객이 전화를 끊지 않는 한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겨우 125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받고 일하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긴장된 업무를 하는 감정노동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가이드>에 따르면 “고도의 긴장된 업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20분씩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도의 긴장된 업무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2-2 경비원

경비원들의 처우, 너무 열악합니다.

대구 OO상가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다가 약 3개월 근무하고 해고되었습니다. 보통 새벽 6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6시에 퇴근하는 24시간 근무였습니다. 한 시간당 4,122원을 받았고, 점심시간이 따로 없고 식당도 없어서 0.5평짜리 경비초소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또 상가에 1천여개의 점포가 있고 24시간 내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게다가 장마철 대비 하수도 청소까지 경비들이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주차관리를 하다가 주차관리원과 다툼이 생겨 주차관리원과 친한 관리사무소장의 지시로 해고되어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가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다보니 사업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제기한 문제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처우 개선의 문제이자 노인인권의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현재 노인인권 지킴이단을 발족하여 여러 가지 노인인권 분야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할 계획인데 경비직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 부당해고 구제 신고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1년 11월 29일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사업주와 소비자 인식 개선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약분야 여성인권 개선을 위해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가이드>를 마련 사업주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함께 여성 감정노동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왜 여성 감정노동인가?>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약 2,400만명 중 제조업 종사자 약 400만명(17%)를 제외하고 '도매 및 소매업'에 약 340만명(14.48%), '숙박 및 음식점업'에 약 180만명(7.71%) 등 이른바 서비스 분야에 취업자 다수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10년 전체 취업자 약 1,400만명 중 약 301만명(30.02%)이 서비스분야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종의 성비를 보면 '서비스 종사자'의 약 65%, '판매 종사자'의 약 51%가 여성입니다. 그러나 이들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실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례를 통해 본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 현실>

여성 감정노동자들은 고객의 폭언과 무례한 행동으로 인격적인 수모와 굴욕감을 느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더욱이 '손님은 왕'이라는 식의 '폭군형 고객', 기계적 친절을 강요하는 사업주의 태도 등이 여성 감정노동자들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를 위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 발간>

인권위는 <사업주를 위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를 11월29일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은 근무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업무 개선과 시스템 가이드라인, 새로운 제안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이뤄져 있습니다.

먼저 근무환경을 위해서는 ▲영업시간 전·중·후 스트레칭 체조 도입, ▲서서 일하는 여성 감정노동자에 대한 의자·바닥매트리스 등 시설 제공, ▲컴퓨터 및 전화기 등 사무환경의 개선, ▲적절한 휴식시간과 휴게시설 확보와 심리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 사업주가 여성 감정노동자의 심리적·육체적 소진을 최소화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업무 개선과 시스템 가이드라인은 고객과의 마찰 발생 시 굴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과를 강요당하거나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고객응대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표준 지침, 패널티 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관리, 자신감을 고취하는 교육 및 권한과 책임의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나아가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객クレ임이 발생하거나 여성 감정노동자에게 복리후생 편의시설을 제공할 때 소속 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적용하는 방안, 고객의 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지하도록 하고 심리 상담실이나 고충처리전담기구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12-3 노숙인

[유사사례]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관심 가져주세요.

한 평 밖에 안되는 조그만 경비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24시간 내내 CCTV가 돌아 가고 아파트 소장은 경비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들이 선물이라도 주면 모두 빼앗아 가고 경비를 위해 무료로 주는 신문도 빼앗아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경비업의 열악한 처우를 인권위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경비원들에게 개인 농장일을 시켜요.

아파트 경비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장의 일을 경비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땅파기, 배추걷이, 씨뿌리기 등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억울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봤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 노숙인이 10개월째 건물 화장실에서 살고 있어요.

서울 OO구에 있는 어떤 건물 관리인입니다. 노숙인 행세를 한 어떤 여성이 10개월 전부터 주로 여자 화장실 안에서 잠을 자며 건물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안쓰러워서 쫓아낼 수 없었는데, 날이 따뜻해지자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냄새도 심하다며 입주자들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과 경찰이 현장에 나왔지만 이 여성이 아무말도 안하고 꼼짝하지 않자 경찰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시설에 보낼 수 없다고 하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그녀의 배가 불러오고 다리 사이로 피고름도 흘러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는 언제라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입니다.

건물의 관리 규정보다 위험에 처해있는 노숙인 산모의 건강권 보장과 보호조치가 우선될 것입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할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의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해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입원을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과나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노숙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녀 스스로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며, 인권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4 노인

[유사사례]

김포공항에 돌아다니고 있는 여성 노숙인을 그냥 방치해야 하나요.

김포공항에 가면 어떤 여성 노숙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신병이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의 판단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정신병원에 반강제로 데려가든지 해야지, 방치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서울시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추방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본인은 노숙자는 아닙니다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날도 추운데 경찰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손도 아니고 발길로 차면서 쫓아냅니다. 서울역사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인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노숙인도 앉아서 TV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의 보호자들이 치료약 비용을 부담을 거부하고 있어요.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의료시설로 구분된 주거시설로서, 주기적으로 촉탁의가 진료·처방하여 보호자들에게 통보하고 보호자들이 처방대로 구매하면 저희가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100% 유료시설로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받고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의약품은 전적으로 보호자 부담입니다. 즉 보호자가 약을 구매하지 않으면 치료를 못하는 것이지요. 가끔 보호자들이 약값을 주지 않아도 차마 사람을 죽게 놔둘 수는 없어서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곤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보호자들의 생활비를 전용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은 인권 문제이자 의료기관의 의무입니다.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실상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권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권위는 사인간의 침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라는 내담자의 인식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것은 비단 특정 노인전문요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의 문제와 의료보장 제도, 상업화된 의료서비스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제도적 문제로서 검토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도자료] 2011년 8월 9일

인권위, 야간노숙행위 금지 조치 관련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8. 9.부터 3주간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전면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에 대해 노숙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대응법을 모색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000연구원(노숙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 00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참여합니다. 조사 결과는 9월 말 경 공개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기초로 노숙인 문제에 대한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권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12-5 한진중공업

[유사사례]

노인요양시설 분위기가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78세 노인인 지체장애 4급입니다. 남편과 아들은 사망했고 딸은 연락 두절이라 현재 혼자 여관(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급자 비용 38만원은 여관비로 내고 노령연금 9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00시에 있는 00요양원에 7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 곳 분위기가 너무 공포스러워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보호사들이 늘 감시하며 못 나오게 했습니다. 겨우 어렵사리 탈출해서 현재의 쪽방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결정문] 2010년 11월 29일

2010년도 노인복지시설 방문 조사

(주문)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하여 노인의 기본생활 욕구와 의료서비스 필요성에 따라 요양등급 분류체계를 개선할 것과,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입소노인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감염, 욕창, 호스피스, 치매, 낙상, 응급 등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설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대전 00노인요양원장에게, 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의 배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준수할 것, 돌봄서비스의 양이 많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인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필요 인력을 적절히 배치할 것, 그리고 요양보호사에게 의료적 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하고 야간근무자 비상 및 응급관리 지침을 휴대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4. 천안 00노인요양원장에게, 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의료적 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하고 야간근무자 비상 및 응급관리 지침을 휴대하도록 할 것, 입소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 이행여부를 기록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5. 청주 00노인요양원장에게, 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하여, 시설에 동거하고 있는 운영자의 가족들을 입소노인 요양과 구별하고 회계상 명확히 구별할 것, 노인의 입소 후 건강 및 기능 상태와 욕구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을 교육하고 적절한 기록 양식을 마련하여 직원별로 명확한 역할 분담에 따라 평가 및 기록 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한진중공업 김진숙님에게는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진중공업 김진숙님 크레인 생활과 관련하여 말할 것이 있습니다. 동건과 관련해서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재 전기공급도 안되고 휴대폰 사용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진숙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인권위의 긴급구제 기각과 회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터넷과 전기 공급은 물과 음식보다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긴급구제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도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중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나 진정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에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가 추가적인 긴급구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측과 음식, 의류, 랜턴, 건전지 등 생활품의 공급을 합의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담자의 말을 귀담아 들겠으며 인권위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사례]

한진중공업 농성자들에게 음식이 차단되고 있어요.

한진중공업 농성자 중에 크레인의 중간에서 농성하는 분들이 네 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에게 사측이 밥을 전달해 주지 않아 지금 굶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인데 한진중공업 농성에 관한 트위터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권위의 담당 조사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6 강정마을

사복경찰이 불법채증하여 인권을 침해했어요.

본인은 올 0월 0일 오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주민 10여명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명불상의 사복경찰 1명이 카메라 및 캠코더로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왜 불법으로 촬영을 하느냐?”, “소속과 이름을 밝혀라” 라고 본인이 항의했으나 사복경찰은 비웃기만 하고 정복경찰들은 그 사람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OO경찰서 과장에게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불법채증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그 역시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부당한 불법채증에 대해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불법채증을 하였다고 생각된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초상권 침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받아 보십시오. 또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업무수행중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이기는 하나 알권리 등의 기본권 관련성은 어떠한 상황이었나에 따라 그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청문감사실 등으로도 민원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강정마을 전경이 시민을 불법으로 연행하고 상해를 입혔어요.

제주 강정마을 시위 주민들이 0월 0일 오전 11시경 경찰에 의해 불법 연행되었습니다. 본인이 이를 막으려고 버스 앞에 서서 위에 올라타려고 했는데 전경들이 끌어내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본인은 버스를 쫓아 뛰어가는 과정에 전경 1명이 덮쳤고 8명의 전경들이 본인의 팔과 다리를 각각 잡고 끌고 갔습니다. 팔목이 꺾여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중대장은 계속하라고 하여 더 세게 꺾었습니다. 전경이 시민을 불법으로 연행하고 팔을 꺾어 상해까지 입힌 것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강정마을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남편이 구름비 마을에서부터 사업장 정문까지 해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남편은 정문에서 경찰차로 갈아타는 틈을 타서 어느 경찰차 밑으로 들어갔는데 경찰 6명이 와서 남편 다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남편은 차 어딘가에 턱이 끼었다고 말을 했는데도 경찰관 6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윗니와 아랫니를 심하게 부딪쳤고 송곳니도 으스러졌습니다. 또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경찰차 안에서 경찰이 남편의 가슴과 배를 폭행했습니다.

12-7 기타

여자로 성 전환한 사람이 여자 목욕탕에 가면 안되나요?

어느 남성 청각장애인이 여성이 되고 싶어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여자 목욕탕을 이용하려는데 다른 여성 장애인들이 그와 같이 목욕하는 것을 극구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 장애인 목욕탕을 가자니 이번에는 남성 장애인들이 거부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장애인이 여성 목욕탕에 가면 성희롱 문제나 장애인 차별 문제가 생기나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차별로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성소수자의 인권은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을 인권위에 진정접수하시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례

왜 군 훈련소에 입소할 때 커밍아웃을 결정해야 하나요?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여 한 달간의 훈련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입소 때, 신상을 기재하는 시간에 성소수자(양성애자)임을 기재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을 시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커밍아웃 여부를 왜 훈련소에서 해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청원경찰인데 근무 중 앉지도 못하게 합니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24시간 단위로 청사 방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원경찰 관리 담당자가 규칙을 개정하면서 24시간 근무 내내 앉지도 못하고, 식사시간 외에는 야간에 음식을 배달시키지 못하며, 휴연 시에도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11-12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_ 13 북한인권

13-1 중국 공안의 북한이탈주민 폭행 · 고문

13-2 북한이탈주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3-3 북한이탈주민 간 평등권 침해

13-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격권 침해

13-5 기타

13-1 중국 공안의 북한이탈주민 폭행·고문

중국 공안이 북한이탈주민을 체포하면 상상이상으로 고문을 합니다.

함경도 출신으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한국으로 오던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당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공안은 체포된 북한이탈주민이 달아난다고 옷을 벗겨 감금·폭행하고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일에 항의했다고 세면장에서 구둑발로 배를 차서 하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세퍼트를 끌고 방으로 와 사람들을 물게 한 적도 있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들이 나중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위에서 도와 주실 수 없습니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긴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꼭 보고하겠습니다.

중국 공안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대우와 행동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서방 여러 나라에서도 항의하고 비인권적이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권위가 중국 공안의 비인권적 대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주신 의견은 상담서로 작성하여 내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사회에 알리고 싶으시면 언론을 활용해 보시거나 외교통상부에 제보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13-2 북한이탈주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북한이탈주민은 경찰에게 감시받고 경찰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건가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에 처음 오면 나쁜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해 보통 정부에서 담당경찰관을 배정해서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이 요새도 수시로 만나자고 하고 갑자기 본인의 집을 방문하겠다고도 합니다. 본인에게 성적 언동을 한 적은 없지만 감시받는 기분도 들고 초라한 느낌도 들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착한 지 7년이나 되었는데 경찰이 수시로 연락하고 만남을 강요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집을 방문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인권위에 진정접수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제도가 시행 중인지, 그렇다면 아직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도 경찰청이나 통일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사례]

경찰이 계속 부탁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가 허위보도를 했어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본인의 신변보호 담당인 형사가 주선하여 어깨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형사가 이에 대해 OO일보 기사가 취재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북한 이야기가 알려지는 것이 싫어 몇 차례 거절했으나 나중엔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기사가 본인의 집으로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탈북 이전, 탈북 시기, 탈북 이후 등 모든 정보를 가지고 취조하듯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경찰에서 저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나중에 기사를 보니 인터뷰 내용과는 달리 본인이 몸을 팔았던 것처럼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개인적인 정보를 기자에게 마구 흘려도 되는 건가요? 또 기사가 이처럼 허위보도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13-3 북한이탈주민 간 평등권 침해

하나원에서 집을 마련해 줄 때 편부모 가정을 차별해요.

2010년 6월, 딸과 손주 2명이 먼저 탈북해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뒤 12평짜리 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본인이 같은 해 7월 탈북했을 때는 집을 따로 주지 않고 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2월 아들이 탈북했을 때도 본인의 딸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평짜리 집에 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보통 인원에게 맞게 집을 주고 있으며, 한 가족이라고 해도 자식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부모 집과 별도로 새로이 집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딸이 편모 가정이란 이유로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에 의해 차별을 받으신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집을 분양할 때 편부모가정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인원에게 따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면적의 집을 받지 못하여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진정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하나원에서 집을 줄 때 독신과 기혼자를 차별합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2010년부터 경남 OO시에 집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모와 함께 살기 위해 본인 집은 비워두고 고모네 집에서 살았는데 6개월 만에 다시 나와 2010년 6월부터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집은 포기하더라도 하나원을 통해 서울에서 집을 얻어 보려고 알아보았는데 독신자의 경우에는 30평방미터 이하의 집만 분양되며 또 보통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는데 그 중 한 번은 제대로 공지도 뜨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혼자에 비해 독신자가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것이며 분양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알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13-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격권 침해

탈북자라고 함부로 대해서 남한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2004년에 한국에 와서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중순경 저녁 7시 쯤에 갑자기 경찰 두 명이 찾아와 왜 찾아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리고 영장도 없이 저희 집 이불장과 침대 등을 마구 뒤졌습니다. 소속과 이름을 물었으나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설명도 없이 아이들의 엄마인 저를 범인 취급하면서 경찰서로 연행해 갔습니다. 연행된 후에 알게 되었는데 본인이 전 남편을 찾아서 한국에 온 것이고 현재 불법체류자와 가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집주인에게 본인이 탈북자이고 간첩일 수도 있으니 무슨 이야기를 해도 30%만 믿으라고까지 했습니다. 탈북자라는 이유로 깔보고 우습게 여겨 남한 땅에서 살아가기 너무 힘이 듭니다.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인권위 판단을 받아보세요.

북한이탈주민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일 경찰이 내담자 말대로 수색영장 없이 수색을 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면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3-5 기타

사기를 당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2001년에 자유를 찾아 왔지만 돈이 없어서 아이들의 소비욕구를 채워줄 수 없고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 힘듭니다.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해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결핵을 앓고 있어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급자로 월 90만원의 지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탈북자의 소개로 어떤 한국인을 만나 인감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면 대신 대출을 받아준다고 하기에 그 서류들을 봤는데 이 한국인이 그 서류로 각종 물건을 구입하는 등 사기를 쳤습니다. 이 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인에 의한 침해는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침해는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사기사건의 피해자라고 해도 피의자가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담자도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여 구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구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바람이 신용회복에 있다고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1-12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_ **14 기타**

14-1 제 코가 석자인 인권위부터

비정규직 문제 개선하시오

14-2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징계, 안 됩니다

14-3 상담 공무원의 신변안전 확보가 시급합니다

14-4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좀 막아주세요

14-5 정신병원은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14-6 선불금 티켓다방에서 근로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14-7 학생에게 성희롱 당한 교사는 억울합니다

14-1 제 코가 석자인 인권위부터 비정규직 문제 개선하시오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 상황 자체가 답답합니다. 하루 빨리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인권위는 이러한 실정법을 넘어 제도와 정책 개선 차원에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인권위에도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인권위부터 자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인권위에서도 꼭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안정적인 일터는 생존권 이상의 자기 존엄과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 해결의 길이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주신 의견은 상담서로 작성해 보고하여 인권위 내부에서도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 인권위 직원에 대한 징계, 안 됩니다

인권위에서 내부 직원들을 징계한다는 뉴스를 듣고 이견 아니다 싶어 전화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인권위에서 직원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로이 표현한 것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건 인권위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기구로서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 나기를 저희도 기대합니다.

인권위를 염려하는 내담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담자 분의 염려가 염려로 끝날 수 있도록 의견을 기록하여 인권위에 공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으며, 인권기구로서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4-3 상담 공무원의 신변안전 확보가 시급합니다

요즘 구청과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OO시 산하 구청에서 40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목 부위와 가슴, 얼굴을 칼로 찔러 중태에 빠진 적이 있고 이와 유사한 일이 다른 도시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도록 국가기관이나 대통령에게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접근성 확보와 상담직원의 안전 확보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네요.

대국민 민원창구에서 상담하는 공무원의 신변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 귀담아 들겠습니다. 인권위 직원도 민원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민원인의 공공기관 접근성 확보와 상담직원의 안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담자 의견은 상담서로 작성해 관련부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14-4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좀 막아주세요

장애2급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있지만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정작 장애인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주차증을 남발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만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있지만 단속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장애인증을 붙인 차량은 모두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이용 전국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서 단속을 하지 않아 업무 부작위가 있는 경우라면 인권위에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문제는 장애인 주차장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인권위가 관련 정책을 권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11년 12월 20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는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OO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속 전담인력을 운영할 것, △주말, 공휴일, 야간시간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미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향후 시민 등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고제도가 실질적·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4-5 정신병원은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정신장애 3급입니다. 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창문이 아예 없어 불이 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폭행이나 가혹행위만 인권 침해가 아니라 정신병원 같은 폐쇄적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에게는 인권침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고령자들은 하나같이 정신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부인과 자녀가 돌보기 귀찮으면 바로 입원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가족들의 안전이 모두 만족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담자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폐쇄공간에 강제로 내몰린다면 그것보다 더한 공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증세가 심각해 본인은 물론 타인에 대한 위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환자와 관련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정신보건시설 관련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현행 정신장애시설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환자의 권리와 가족들의 안전과 복지 도모 차원에서 격리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모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담자 주장은 상담서로 작성해 보고하여 관련 부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6 선불금 티켓다방에서 근로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 소개소를 통해 선불금 600만원을 받고 2개월째 다방에서 일했습니다. 첫 달은 150만원, 이후부터 2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티켓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라 우려도 되었으나 급한 맘에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안 나가면 월비라고 급여를 삭감하는데 하루에 23만원을 감액합니다. 두 번째 달에는 10일간 일을 하지 못해서 급여가 모두 월비로 깎여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다 갚지 않으면 일도 그만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성단체의 도움과 법률자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권위의 업무 성격상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부당한 월비삭감, 선불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강요 문제가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여성단체에 연락하여 상담도 하고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4-7 학생에게 성희롱 당한 교사는 억울합니다

가죽이 공립중학교 교사입니다. 학생이 여교사와 여학생 치마 속 몰카를 찍어 수업 시간에 돌려보다가 들켰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교장이 가해자가 학생이니 좋게 넘어가자면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회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가해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학습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학습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원회는 학교나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위원회가 관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는 학교와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에서의 학생은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사의 권위를 침해한 경우 학교가 선도위원회를 열어 재발방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원회에 접수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 · 민원 접수방법

전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1
팩스	02) 2125-9811~2
우편/방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 빌딩 7층
부산인권사무소	611-7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회관 7층 T 051) 710-9710~6 / F 9717
대구인권사무소	700-732)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6층 T 053) 212-7000~6 / F 7007
광주인권사무소	501-730)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광주은행본점 6층 T 062) 710-9711~6 / F 9717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이메일	hoso@nhrc.go.kr hoso@humanrights.go.kr

구금 · 보호시설 수용자의 경우,

시설에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이용하거나,
면접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진정은 시설직원에게 요구하면 인권위에서
직접 방문해 진정을 접수 받습니다.

1331

당신의 인권을 지켜주는 번호입니다